

---

**對중국 농식품 비관세장벽 사례조사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

**2016. 12.**

# 목 차

제1장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의 이론적 고찰 .....	2
제1절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의 정의 및 분류	
1.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의 정의 .....	3
2. 비관세조치의 분류 .....	5
제2절 비관세조치 도입의 배경	
1. 비관세조치의 기본원칙 .....	10
2. 비관세조치 도입의 효과 .....	13
제2장 중국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	15
제1절 중국의 교역 배경 및 비관세조치 주요 쟁점	
1. 중국의 교역 배경 .....	16
2. 비관세조치 주요 쟁점 .....	21
제2절 중국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1. 중국의 농식품 관련 비관세 장벽 기준 사례 .....	30
2. 협의의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	39
3. 광의의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	46
4. 중국의 주요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주요 기준 사례 .....	59
제3절 중국 농식품 관련 비관세 장벽 신규 사례	
1. 협의의 비관세 장벽 신규 사례 .....	69
2. 광의의 비관세 장벽 신규 사례 .....	86
제4절 중국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	
1. 농식품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분석 .....	95
2. 농식품 수출 통관절차별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 .....	105
제3장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책적 제언 .....	114
제1절 對중국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개요 .....	115
제2절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의의 비관세장벽 해소 .....	119
제3절 협의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22

PART I

제 1장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의 정의 및 분류  
제2절 비관세조치 도입의 배경

## 1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의 정의

- FTA 등을 통해 자유무역이 만연해지고 관세 철폐의 움직임이 팽배해짐에 따라, 국가는 국내 산업의 육성과 보호, 국가 간 제도와 문화의 차이, 인체 건강과 동식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를 행함
- OECD는 비관세조치를 “상품에 관한 국제 무역의 수량이나 가격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잠재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sup>1)</sup>로 정의함
- 한 마디로, 비관세조치는 문자 그대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 국이 행사한 모든 조치 중 관세 이외의 것을 의미함
  - 모든 조치는 한 국가의 제반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정 및 조치,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제도 운용에 있어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제반 관행 일체를 의미함
- 하지만 각 국이 행사하는 비관세조치는 수입품의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라고 정의함
- 즉, 비관세장벽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취해진 무역 왜곡 조치라는 점에서 비관세조치와 구별됨과 동시에,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의 일부로 인식해야 함 (Kuwahara, 2009)
- 비관세장벽은 교역 국가 간 자유무역을 왜곡 및 억제하고 그에 따른 피해로 인해 사회적 후생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관세장벽과 함께 건강한 교역문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임

1) van Tongeren, F., J. Beghin and S. Marette (2009), “A Cost-Benefit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Non-Tariff Measures in Agro-Food Trade”,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Working Papers, No. 21, OECD Publishing.

- 관세장벽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1947년 GATT 체제 출범 이후 선진국을 시작으로 국가 간 관세 철폐가 만연해짐에 따라 무역 제한 수단으로서 비관세조치가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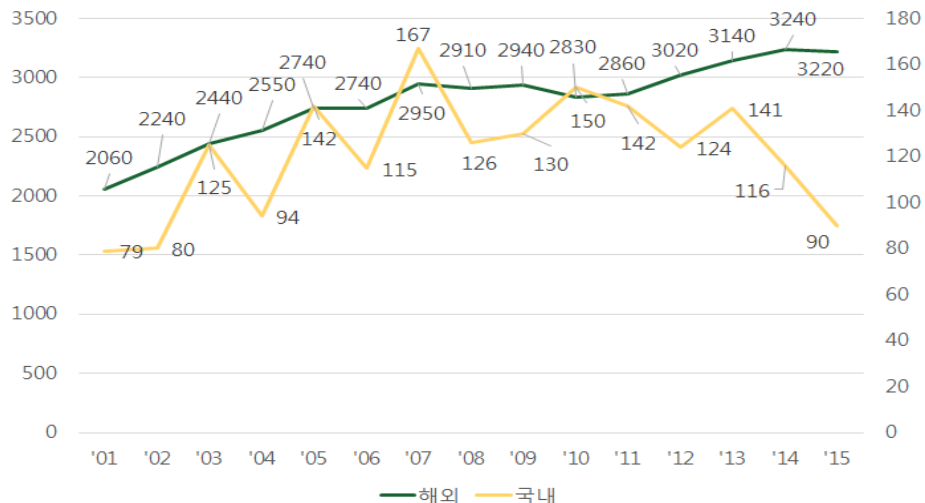
■ 하지만 비관세조치가 국가 간 입장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관세조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

- 자국 산업 및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실시한 합리적인 조치의 비관세장벽일 수도 있으며, 그 외 정치적 보복이나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등 비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실시한 비관세장벽일 수 있음

■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상대 교역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사례를 발굴해야 하며,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국내외 비관세장벽 연구 논문 수 추이>

(단위: 건)



주: 논문 검색 사이트인 Google Scholar에서 해외의 경우 “Non-Tariff Barriers”로, 국내의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검색

## 2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의 분류

■ 비관세조치는 1983년 도쿄라운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1987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 관련 6가지 협정을 마련함

-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체결된 6가지 협정으로는 무역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vestment Measures),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이 있음

■ 1995년 WTO가 출범하여 국제 무역의 비관세조치를 관장하고 있으며, 협정을 발의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의 비관세조치를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 관련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WTO 협정문으로는 동식물 검역 및 위생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 무역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Preshipment Inspection),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Rules of Origin),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Import Licensing Procedures), GATT 20조의 일반적 예외(공중도덕 보호조치,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조치, 유한 천연자원 보존 조치, 공급 부족산품의 획득 등임)

■ 또한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을 통해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는 등 국제적으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비관세장벽의 개념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비관세장벽을 해석하는 국가,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에 따라 분류체계와 유형이 상이함

- 해외의 경우, OECD는 비관세장벽을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UNCTAD

는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 두 개의 관점에서 수입조치를 15개로 구분하였음

- 국내의 경우, 외교통상부는 비관세장벽을 13개로 구분하였으며, 노재봉은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기관/연구자에 따른 비관세장벽 분류 방법>

기관/ 연구자	내용		
OECD (2009)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상 기술장벽 △기타 기술조치 △가격 통제조치 △수량통제조치 △준관세조치 △금융조치 △반경쟁조치 △수출관련조치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분배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UNCTAD (Kuwahara, 2009)	수입조치	기술 조치	△동식물 검역(SPS) △무역상 기술장벽(TBT)
		비기술 조치	△선적전 검사와 기타 조치들 △가격제한조치 △수입허가·쿼터·수입금지 및 기타 수량제한조치 △요금 및 기타 유사관세조치 △금융조치 △불공정 조치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보조금(수출보조 제외) △정부조달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수출조치	△수출관련 조치(수출제한 등)	
외교 통상부 (2012)	△수입규제(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표준 및 인증)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노재봉 (1992)	△수량제한(수입금지, 수입할당, 수출자율규제) △수입절차((비)자동적 수입허가, 통관절차) △가격제한(가격조사, 가격유지, 가격인상) △기타 제한(표준 및 규정에 의한 제한, 원산지규정, 국내생산분 포함규정, 정부조달, 금융상 제한, 수입자 제한 등)		

Sour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

■ 기관 또는 연구자마다 비관세장벽 유형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몇 몇의 유형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비관세장벽의 공통 유형은,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PS) △통관관련 제한조치 △수량제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제도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시장 △지식재산권 분야 △국가 간 개방 수준에 차이가 큰 서비스 분야 △투자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설명>

대분류	세분류	정의
수입권 한· 자격 제한	국영무역체도로 인한 애로	특정 품목(또는 전 품목)에 대한 수입창구를 국가가 독점 운영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대한 직접 수출이 용이치 않거나 수출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애로 발생
	지정무역체도에 따른 애로	특정인(들)에 대해서만 수입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대한 직수출이 곤란하거나 대행 수수료 등 비용이 증가
	무역업 허가제에 따른 애로	수입자격을 허가제로 운영·제한하고 있어 애로 및 비용 증가 ※ 예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역업 자격 취득을 불허하는 경우 등
수입 규제· 수량 제한	수입금지	특정 품목(예 :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또는 차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수출이 불가능
	비자동 수입승인	특정 품목 수입 시 사전에 일정한 요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수입 거부·보류 등 수입억제수단으로 활용
	자동수입승인	일정 기간 내 특정 사유가 없는 한, I/L(수입허가서)을 자동 발급하고 있으나 종종 부당한 발급 지연이나 수출조건 수정 등을 강요
	수입쿼터	국별, 업체별 수입쿼터제도의 비합리적 운영으로 수출에 애로
	관세할당	일정 수량까지의 수입에는 정상관세를 부과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따른 수출 제약
	수출자율규제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국내 업체간에 수출물량을 자율적으로 규제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감시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정 지역을 수입감시 대상지역으로 정해 별도 관리를 하는 등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하는 데 따른 애로
원산지 제도	차별적 원산지증명서 요구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애로
	보다 강한 원산지 기준 적용	특정한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보다 강한 원산지 기준을 요구
	불명확한 원산지제도	불명확한 원산지규정과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운용으로 많은 마찰 소지 및 수출애로 발생
	무리한 원산지표시 요구	부품, 상품 자체 등 특정 부분에 대한 표시나 특정 방법에 의한 표시 등 무리한 원산지 표시 요구에 따른 애로
라벨링 (Labelling)	수입품의 상이한 표시/부착 요구	수입품에 대해서는 자국상품과 비교해 상이한 라벨링 표시나 부착을 요구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
	라벨링에 과도한 표시 요구	라벨링 표기 사항으로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과도한 내용들을 요구하는 데 따른 애로
	자국어 표기만을 요구	자국어 표기 외에 영어 표기 등을 인정치 않아 부담이 가중
	특정 위치에 대한 표기 요구	상품 자체에 대한 표기 등 특정 위치 표시를 강제하는 데 따른 애로사항
	완제품에 국가별 조달비율 표시를 요구	완제품이 다수 국가로부터 부품 조달·생산 등을 거친 경우 완제품 구성부분에 대하여 국가별 조달비율을 표시 할 것을 요구
표준· 규격 및 검사제 도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국제표준과 괴리된 자국 고유의 기술 요건·표준을 고집하는 데 따른 낭비 및 수출애로
	(국제규격 등) 유사 규격 불인정	기술적으로 동일한 기준 또는 보다 강한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 표준·규격(특히 국제규격)들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절차에 따른 검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데 따른 애로
	타국 검사기관 검사대행 불인정	자국 소재 검사기관 이외에 타국의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결과는 인정치 않는 등 융통성 없는 검사제도에 따른 수출애로
	이중의 상이한 표준/규격 제도	동일 지역에서의 수출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격·표준을 동시에 요구하는 데 따른 수출 애로



	복수기관에 의한 중복검사 실시	동일한 국가의 서로 다른 기관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검사를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데 따른 애로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기준 적용	수입품에 대하여 (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까다로운 검사 기준·기술 요건을 요구하는 데 따른 애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술요건 요구	안전, 보건 등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또는 복잡한) 규격, 표준, 기타 기술요건을 요구하는 등의 애로
	인증 획득, 검사에 장기간 소요	해당국 수출을 위해 필요한 규격 및 인증 획득이나 검사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 돼 사실 상 수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
	과다한 검사료 요구	해당 국 통관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와 관련, 지나치게 높은 검사료를 요구하여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해치는 경우
	검사 지연 및 연기	수출자의 잘못에 기인하지 않은, 수입국 사정에 의한 검사 지연으로 손해 또는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경우
	짙은 기준 변경 및 짧은 공시기간	해당 국에서 지나치게 자주 검사기준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따른 사전 공시기간을 너무 짧게 주어 대처하기가 곤란한 경우
	불공정한 검사	검사기관으로 자국(또는 관련국)의 민간기업을 지정, 대행토록 함으로써 정보 유출이나 불공정한 검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투명한 검사 기준 및 절차	해당국 통관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기준이나 절차가 애매하고 불투명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수입 통관	과다한 서류요건	현지 통관 시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작성 요구로 큰 부담감을 느낌
	자국어에 의한 통관서류 작성 요구	통관서류를 반드시 자국어로만 작성토록 요구하여 서류 작성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
	중복된 자료 요구	해외 통관과 관련하여 현지의 각기 다른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유사한 자료들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발생
	자의적 심사 기준	해외 통관 시 현지 세관별, 담당자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 지연이나 혼선을 야기
	지나치게 잦은 통관방침 변경	현지의 통관 방침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어 우리 수출업체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차질을 발생
	지나친 통관 지연	현지 세관의 근무시간이 너무 짧거나 세관원의 업무 태만, 인력 부족 등으로 종종 통관이 지연되어 차질을 발생
	부당한 통관 시비	중량, 포장 상의 사소한 차이 등 부당한 사유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업체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경우
	과도한 지체금 등 부과	수입신고가 약간 늦어진 경우에도 과도한 지체금을 부과하는 등 외국의 수출업체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과다한 통관 수수료	현지 세관에서 부당한 또는 지나치게 높은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하여 부담을 주는 경우
	부적절한 HS code 분류	현지 세관의 HS code 분류가 일관성이 없거나 부당하게 적용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강요하는 경우
샘플, 전시용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샘플 등) 비매품이나 (전시용품 등) 임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통관행정을 실시하는 경우	
선적전 검사 및 영사확인제도	복잡한 선적전검사 절차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사절차 및 장시간 소요로 인한 선적 지연
	선적전검사 수수료 과다	과다한 선적전검사 수수료 징수로 수출업체에 부담을 가중
	지나치게 높은 감정가격	선적전검사 기관의 감정능력 부족 등으로 자의적으로 높게 감정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현지 관세부담을 가중
	선적전검사와 현지 검사의 중복	선적전검사를 필한 물품을 현지에서 다시 검사하는 데 따른 수출 지연 및 애로
사전영사확인제도	수출시 국내 해당 국 대사관에서 수출 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및 수출 지연 등의 문제 발생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최저가격(또는 표준가격고시)제도	최저 (또는 표준) 수입가격을 정하여 그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게 하거나 I/L(수입허가서) 발급 거부 등을 통하여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최고가격제도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수입가격의 상한을 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현지 통관이 지연되는 등 애로요인으로 작용
	실거래가격 불인정 및 자의적 평가	세관신고 시 실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의 자의적인 평가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차별적인 수입부가금	수입품에 대하여 자국산과 차별적인 조세나 각종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출업체들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운송·항만 이용	보세운송 제한	현지 내륙으로의 보세운송 제한에 따라 통관 지연 및 창고료 등 운송비용의 증가를 유발
	수입항구 제한	특정 물품별로 수입항구를 별도로 지정해 놓아 불필요한 운송비용 및 시간 지연 등의 불편한 대우
	특정 운송수단 강요·제한	특정 국가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반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부당한 항만 이용료	현지 항만의 입·출항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각종 항만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통과화물에 대한 예치금제도	단순히 국토를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
수입대금 결제	신용장 개설 제한	수출입을 연계한 경우에만 L/C 개설을 허용하는 등 신용장 개설 제한을 통하여 수입억제정책을 펴는 경우
	외환할당	현지 수입상들이 대금결제를 위해 외환을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없도록 외환을 배정함으로써 수입을 통제하는 경우
	수입대금 지불기간 제한	선적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상습적 대금결제 지연 등	정책적으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수입대금 결제를 지연하거나 미결제

Source: 비관세장벽 포털(<http://ntb.kita.net>)

1 비관세조치 도입의 기본 원칙<sup>2)</sup>

## (1) 비관세조치의 통보와 협의 의무

■ SPS 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 내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할 때, 그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의 개발, 채택 및 집행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다자간 규칙임

- SPS 조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위험이 적절히 평가된 후 취해져야 되며, 동 조치가 국제기준이나 지침 및 권고와 최대한 부합해야 되고,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다른 회원국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돼야 함
- 현재 WTO는 SPS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 개의 국제표준 제정 기구를 인정하고 있음
  - 세 기구 중 하나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식품에 대한 규격, 지침, 최대잔류허용기준 등의 표준을 정하는 협의기구임
  - 국제수역사무국(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는 1923년에 설립되었으며 전염병 방지에 관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임
  - 마지막 국제기구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은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식물 병해충 유입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함

■ TBT 협정은 국가 간 수입품에 대해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 등을 적용하여 제품을 평가함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 돼 교역의 비효율성을 억제하고자 제정된 다자간 규칙임

- TBT 조치는 수출품의 품질보증,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환경 보호, 또는 기만적 관행 방지,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상대국 역시 그러한 취지의 조치는 인정해야 함

2)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즉, TBT 조치는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국제교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규정과 표준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이어야 함

■ SPS 및 TBT 협정문에 의하면, WTO의 각 회원국은 동식물 위생 및 검역에 대한 조치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SPS 위원회에,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을 시행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TBT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WTO 의 각 회원국은 시행한 SPS/TBT 조치로 인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상대국의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조치의 적용 품목, 명확한 목적과 합리적 이유를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SPS/TBT 위원회에 통보된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대국이 자국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WTO에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이에 응해야 함

## (2) SPS/TBT 협정문에 따른 원칙

■ SPS 협정문에 따르면, SPS 조치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 다른 회원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 위험평가에 기초, 적정보호 수준 유지, 부당한 차별 금지, 지역화 (regionalization) 인정, 투명성 등을 감안해야 함 (5조 6항)

■ 또한 수입품으로 인해 병해충 유입, 정착 또는 확산이 의심될 경우, SPS 조치는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잠재적 손실 및 피해, 수입국 영토 방제 및 박멸 비용,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별 상대적 비용을 고려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함 (5조 3항)

■ TBT 협정문은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강제적)의 준비, 채택 및 적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2조)하고 있으며, TBT 조치는 차별금지, 필요 이상의 무역규제 금지, 국제 표준의 활용, 정당성 유지, 동등성 인정, 합리적인 계도기간 보장, 투명성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 표준(준수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을 준비하고 채택하거나 적용할 때는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4조)

- 모범관행규약은 부속서 3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기술규정의 준비 및 채택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유사하나 60일 의견제시기간 허용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돼 있음

■ 또한, SPS/TBT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SPS/TBT 협정문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을 제시하고 있음

- SPS 위원회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SPS 조치를 시행한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SPS 조치의 투명성, 동등성, 지역화 인정, 보호수준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차별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G/SPS/53, 2010. 05)
- TBT 위원회 역시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GRP를 규정함으로써, TBT 조치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적정수준 유지,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소비자와 무역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비용 및 편익평가의 중요성, 의무적 방법 최소화 등을 제안하고 있음

<NTM 도입의 모범규제관행(GRP) 원리>



Source: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비관세조치 도입의 효과

■ Deardorff and Stern(1998)은 비관세조치를 통해 수입량 감소, 수입가격 상승, 수입수요 탄성치 변화, 시간에 따른 효과의 변화, 불확실성, 소비자 후생감소 효과, 행정비용 소요 등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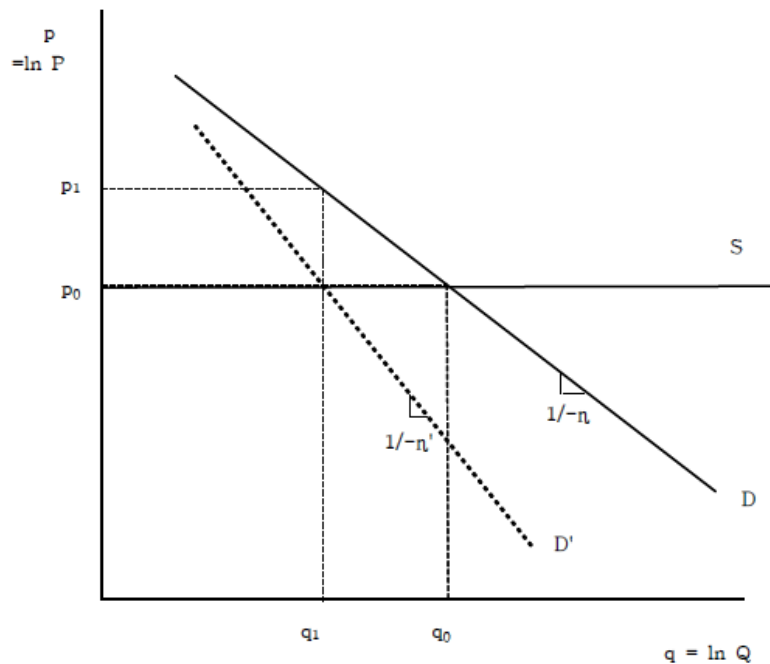
■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sup>3)</sup>가 비관세조치를 시행했을 때, 해외공급곡선에 따른 수입수요곡선의 변동과 그에 따른 규제상품의 국제가격은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결정됨

- 우선 우하향하고 있는 곡선 D는 비관세조치가 없는 경우의 수입수요를 의미하며, 상품의 국제가격  $P_0$  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는 S는 해당 상품에 대한 해외 공급곡선을 나타냄
  - 공급곡선 S가 수량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없는 이유는, 분석 대상 국가가 소규모 경제 국가이기에 수량을 통제하는 어떤 정책적 변동에도 국제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임
-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수입수요 곡선 D와 공급곡선 S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을 이룸에 따라,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는  $q_0$  만큼의 물량을 수입하고,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이  $P_0$  에서 형성됨
- 이 때, 수입국이 비관세조치를 시행하면,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출기업이 부담함에 따라 국내가격이  $P_1$ 으로 상승하는 반면, 수입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에 국제가격은  $P_0$  에서 변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수입국 내 시장은  $(P_1 - P_0)$ 만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수요는  $q_0$  에서  $q_1$ 으로 감소하게 됨
  - 비관세조치에 따라 수출기업에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은, 제품의 단위당 비용  $1/\eta$ 을  $1/\eta'$ 로 상승시키게 되어 비관세조치 後 수입수요 곡선 D'은 비관세조치 前 수입수요 곡선 D에 비해 기울기가 가파름

3) 일반적으로 한국과 같이 수입국의 정책이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를 의미하며, 미국은 대규모 개방 경제 국가라고 함

- 결과적으로, 수입국의 비관세조치에 따른 효과는 자국의 제품 가격을 ( $P_1 - P_0$ ) 만큼 상승시킴과 동시에 수입량을 ( $q_0 - q_1$ ) 만큼 감소시키는 무역왜곡 효과가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

<비관세조치의 무역왜곡 효과>



-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품의 차별화된 시장이 존재할 경우, 비관세조치가 오히려 무역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의 연구 결과도 있음

- 전상곤 외(2010)는 우리나라 정부가 비관세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 표시제가 국내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무역왜곡 효과보다는 소비자 잉여가 4,921억 원, 생산자 잉여는 5,444억 원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비관세조치에 대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치 시행 전후의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한 특수성을 명확하게 식별할 필요가 있음

## PART II



# 제 2장 중국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 제1절 중국의 교역 배경 및 비관세조치 주요쟁점
- 제2절 중국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기존 사례
- 제3절 중국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신규 사례
- 제4절 중국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



## 1 ..... 중국의 교역 배경

## (1) 중국의 교역 현황

- 중국은 2001년 World Trade Organization(WTO) 가입 후,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중국의 수출액은 2001년 19조 9772억 원에서 13년 동안 연평균 9.94%의 성장률로 증가함에 따라 2014년 68조 4449억 원에 도달함
- 중국의 수입액은 2001년 10조 5,902억 원에서 2014년에 133조 1,668억 원을 기록하며 13년 동안 연평균 19.99% 증가 하였으며, 이는 수출량의 2배가 넘는 규모임
- 중국은 농산품 교역에 대하여 2007년까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해외 농산품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 2008년부터 수입액이 수출액을 앞서기 시작하여 순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입 성장률은 연평균 24.72%, 수출 성장률은 연평균 12.64%를 기록하였음
  -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수입 성장률은 14.69%,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6.86%을 기록하여, 수출과 수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장 속도가 점점 더뎠고 있는 있으나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최근 교역 기록 중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수입 성장률이 연평균 26.7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수출 성장률 또한 연평균 19.87%로 급등한 시기임
- 2001년 WTO가입 이후 중국의 농식품 교역량의 급증으로 중국의 농식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반면, 식품 위생 정책의 부재 및 자국 기업의 역량 부족 등으로 내수시장 보호 및 식품 위생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름
- 현 시점에서 중국의 비관세 조치 역할은 내수시장을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자국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의 위협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고 내실을 강화하는 데 있음

- 중국은 농산품의 국제 가격 하락으로부터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곡물 수입 매입 정책을 통해 국제 가격을 통제하였고, 2015년부터 비축한 81.46 미터톤<sup>4)</sup>의 곡물을 소비하기 시작함

## (2) 중국의 품목별 교역 현황

■ 중국의 농수산 수입품을 총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지방과 오일, 생선과 갑각류, 음식물 쓰레기 및 가공된 동물 사료 등 세 개의 품목은 수입량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7개 품목의 수입량은 꾸준히 상승함

- 중국의 오일시드 수입액은 2011년 약 32,021 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5.60% 성장하여 2015년 39,817 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농식품 수입액 중 약 35.26%를 차지하였으며 타 품목대비 수입액이 가장 높음
- 동 기간 시리얼 수입액은 2011년 2,016 백만 달러에서 2015년 9,305 백만 달러로 연평균 46.75% 성장하여 타 품목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오일의 성장률은 연간 -9.05%로 10개 품목들 중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하였음
  - 특히 오일은 2012년 13,041 백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정점에 오르다가 다음 해인 2013년 10,823 백만 달러로 17.00%로 감소하며, 2015년에는 7,895 백만 달러로 더 감소하였음

---

4) 1 미터톤 = 1000kg

<중국의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 US \$)

수입 주요 품목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오일시드	32,021	38,583	42,627	45,891	39,817	5.60
시리얼	2,016	4,751	5,054	6,175	9,350	46.75
오일	11,540	13,041	10,823	9,118	7,895	-9.05
동물 가죽	6,845	7,125	8,026	8,261	7,498	2.30
육류	3,411	4,108	5,930	5,844	6,798	18.81
생선 & 갑각류	5,588	5,489	5,994	6,584	6,336	3.19
식용 과일 & 견과류	3,035	3,808	4,101	5,144	6,010	18.62
가공 처리된 동물 사료	3,102	3,048	3,654	3,981	4,427	9.30
음료	2,557	3,102	3,058	2,974	4,281	13.76
밀가루, 녹말가루, 우유 등	1,626	1,946	2,584	2,810	3,843	23.99
주요 수입 품목 계	71,741	85,000	91,850	96,781	96,255	7.63
총 수입 품목 계	83,844	99,280	108,818	115,862	112,909	7.72

Source: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calculation based on UN COMTRADE statistics)

■ 중국의 농식품 주요 수입국은 북미, 대서양,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북미와 대서양 내 선진국들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수입 규모가 타 국가들에 비해 더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농식품 주요 수입국들의 변동은 주로 2014년 기준 1위 미국, 2위 브라질, 9위 프랑스, 10위, 태국을 제외한 중위권(3위~8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미와 대서양에 위치한 국가들이 중국의 농식품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음

- 붉은 계열의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은 2010년 중국이 수입하는 주요 국 상위권(각각 3위, 4위, 6위)에 속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규모가 점점 하락하고 있음
- 반면에 녹색계열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의 경우, 2010년 주요 10개국에서 중위권에 위치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증가하여 상위권을 기록함

<중국의 농식품 주요 수입 국가 현황>

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3	아르헨티나	호주	호주	호주	호주
4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캐나다	뉴질랜드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캐나다
6	캐나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7	인도네시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아르헨티나
8	태국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9	뉴질랜드	태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0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Source: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주: 중국의 농식품 주요 수입 품목(2014년 기준, 오일시드, 오일, 동물가죽, 생선 및 갑각류, 치즈/계란/꿀, 시리얼, 고기 및 식용 부산물,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가공 처리된 동물 사료, 음료)별 주요 국가의 수입액을 합산

(3) 비관세장벽 주요쟁점 및 사례 분석 방향

■ 중국의 2001년 WTO 가입 이후의 농식품 교역 배경을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농식품 시장 규모의 성장과 SPS/TBT 조치 통보 트렌드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현재 중국이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함

- SPS/TBT 조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 정세와 통보 유형, 농식품 품목별 발생 빈도 수 등을 파악함

■ 중국의 농식품에 대한 지리적·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수입 농식품의 규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 및 검토를 위한 기준을 도출함

■ 특히 한국을 겨냥한 비관세장벽과 기존 사례를 분석한 후, 중국이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조치한 비관세장벽과 비교 분석함

- 중국의 농식품 수입 주요 선진 국가를 겨냥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 사례와 비교함

■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비관세장벽 최근 기존 및 신규 사례를 유형별 수출 통관절차별로 조사 및 분석한 후, 비관세장벽 해소 및 대응 방안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

**비관세장벽 기준·신규 사례**

### 비관세장벽 유형

<b>수입제한·자격 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무역체제로 인한 장벽</li> <li>• 지정무역체제에 따른 예외</li> <li>• 무역업 허가제로 인한 수출제한</li> </ul>	<b>수입 규제·수량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금지</li> <li>• 비자유 수입승인</li> <li>• 자용수입 승인</li> <li>• 수입쿼터</li> <li>• 관세 할당</li> <li>• 수출규제 규제</li> <li>• 특정지역 수입 감시제</li> </ul>	<b>원산지 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적 원산지 증명서 요구</li> <li>• 보다 강한 원산지 기준 적용</li> <li>• 불명확한 원산지 제도</li> <li>• 유리한 원산지 표시 요구</li> </ul>
<b>라벨링 (Labellin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산과 상이한 표시 및 부착 요구</li> <li>• 라벨링에 과도한 표시 요구</li> <li>• 자국어 표기만을 요구</li> <li>• 특정 위치의 대한 표시 요구</li> <li>• 한자음에 국가별 호칭을 표시 요구</li> </ul>	<b>표준 규제·검사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표준과의 불일치</li> <li>• 국제규격 등 유사규격 불인정</li> <li>• 타국 검사기관 검사대행 불인정</li> <li>• 복수기준에 의한 중첩검사 실시</li> <li>• 수입물에 대한 차별적 기준 적용</li> </ul>	<b>수입통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서류요건</li> <li>• 부당한 통관시비</li> <li>• 중복된 자료요구</li> <li>• 과도한 지체금</li> <li>• 자의적 심사기준</li> <li>• 과도한 통관수수료</li> <li>• 지나친 통관지적</li> <li>• 검열제 불투명성</li> </ul>
<b>선적전 검사 및 영사확인 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선적전검사 절차</li> <li>• 선적전검사 수수료 과다</li> <li>• 지나치게 높은 규정가격</li> <li>• 선적전검사와 행정검사 중첩</li> <li>• 사전영사확인 제도</li> </ul>	<b>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가격 또는 표준가격고시 제도</li> <li>• 최고가격 제도</li> <li>• 실거래가격 불인정 및 자의적 평가</li> <li>• 차별적인 수입부가금</li> </ul>	<b>운송·항만 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운송 제한</li> <li>• 수입항구 제한</li> <li>• 특정 운송수단 강요/제한</li> <li>• 부당한 항만 이용료</li> <li>• 단순 통과화물에도 예치금 요구</li> </ul>

기 타

### 對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절차

생산·유출(국내) → 통관 절차 → 판매 후(현지)

생산·유출(국내) 단계:
 

- 중국 수입허가증(일련번호)을 포함한 통관서류 발급(기간 종료)
- 포장지표 등 특색있는 표시(20%에서 60%까지)를 사용함 요구

통관 절차 단계:
 

- 수출 신청서 제출
- 포장 라벨링 및 운송
- 수출 관세 신고
- 수입 관세 신고
- 수출 관세 신고
- 환관 심사
- 환관 통관
- 환관 수수료

판매 후(현지) 단계:
 

- 시장 조차금, 통관보류 등 지체금에 대한 일반세금·직접세(관세) 부담
- 중국산 한국 발원장지에 대해 중국이 일정한 최소대응기준 적용
- 수입 신청서 제출
- 수입 관세 신고
- 환관 심사
- 환관 통관
- 환관 수수료
- 소비자 구매 후
- 최종 수입확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

기타:
 

- 수입, 과방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분류가 적절 불일치(관세청에서 사전에 적용되는 등 통관되지 않음)
- 중국내 리 지역 제한(세관의 목적별한 통관세가가 산한 통관 처리)으로 입국하여 우리 업체(수출업체)에 수입 신청서 제출(허가) 등
- 통관별 중첩에 한국을 발표 시행되고 있는데 통관하는 세관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동일하나 적용되는 통관율에 상이한 경우 발생

Source: 수출 농산물 중국 통관 매뉴얼(2014), 한국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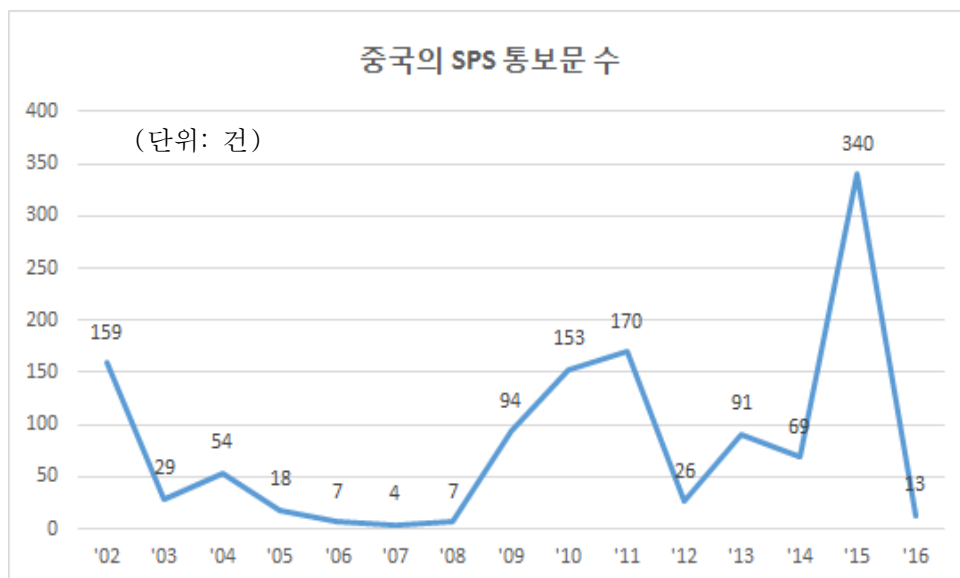
사례의 공통되는 특징을 감안하여, 비관세장벽 사례의 유형별/통관절차별 재분류

## 2 비관세조치 주요 쟁점

### 가. SPS 조치

#### (1) 중국의 SPS 조치 동향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2002~16년 10월까지 1,234개의 SPS 조치를 통보하였음
- 가입 직후인 2002년 중국은 159개의 SPS 조치를 통보한 후 상대적으로 통보 수가 감소하였으나, 식품 위생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09년부터 SPS 조치 통보문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함
  - 2008년 멜라닌 조제분유 사건 이후 식품위생안전 문제가 중국 전역에서 이슈화 되었고,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SPS 통보가 급증하였음
- 국가적으로 식품 위생의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은 SPS조치를 2011년 170개, 2015년 340개를 통보하였음



Source: WTO,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SPS조치 통보 유형은 긴급, 일반, 통보문의 보완 및 수정, Availability of Translates 등 4가지가 있으며, 그 중 일반 통보문은 1164개(전체의 94.3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 SPS조치의 일반 통보문은 2015년에 339 건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었으며, 통보문 보완 및 수정과 Availability of Translations은 각각 2004년 12건, 5건으로 기록됨
- 2002~16년 10월까지 중국은 다른 통보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건(전체의 약 2.43%)의 긴급통보를 하였음

<중국의 SPS조치 통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연도	통보문 보완/수정 (비율)	긴급 통보 (비율)	일반 통보 (비율)	Availability of Translations (Supplement)	계
'02	4(2.52)	12(7.55)	143(89.94)	0	159
'03	1(3.45)	1(3.45)	27(93.10)	0	29
'04	12(22.22)	4(7.41)	33(61.11)	5(9.26)	54
'05	3(16.67)	1(5.56)	14(77.78)	0	18
'06	3(42.86)	0	4(57.14)	0	7
'07	0	0	4(100)	0	4
'08	0	0	7(100)	0	7
'09	2(2.13)	4(4.26)	86(91.49)	2(2.13)	94
'10	0	0	153(100)	0	153
'11	1(0.59)	5(2.94)	161(94.71)	3(1.76)	170
'12	0	0	25(96.15)	1(3.85)	26
'13	1(1.10)	2(2.20)	88(96.70)	0	91
'14	0	1(1.45)	67(97.10)	1(1.45)	69
'15	1(0.29)	0	339(99.71)	0	340
'16	0	0	13(100)	0	13
계	28(2.27)	30(2.43)	1164(94.33)	12(0.97)	1234

Source: WTO,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2002~16년 10월 동안 중국이 한국을 지칭하여 통보한 SPS조치는 2개(2002년, 2004년 각 1건)에 불과한 반면, 한국을 포함한 중국의 교역국을 대상으로는 1,125건의 SPS조치를 취했음
- 2002년 한국 외 특정 교역국에게 87개의 SPS를 통보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에게 2013년 230개의 SPS를 통보함
- 중국은 특정 교역국을 지칭해서 SPS 조치를 통보한 건수는 WTO 가입 직후인 2002년이 가장 많았으며, 그 후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SPS 조치를 통보함

<중국의 교역국별 SPS조치 통보 현황>

(단위: 건)

연도	한국	한국 외 특정 교역국	한국을포함한교역국 (한국포함특정교역국, WTO회원국,모든교역국)	SPS 통보문 수
'02	1	87	71	159
'03	0	2	27	29
'04	1	9	44	54
'05	0	1	17	18
'06	0	0	7	7
'07	0	0	4	4
'08	0	1	6	7
'09	0	5	89	94
'10	0	0	153	153
'11	0	0	170	170
'12	0	0	26	26
'13	0	2	89	91
'14	0	0	69	69
'15	0	0	340	340
'16	0	0	13	13
계	2	107	1125	1234

Source: WTO,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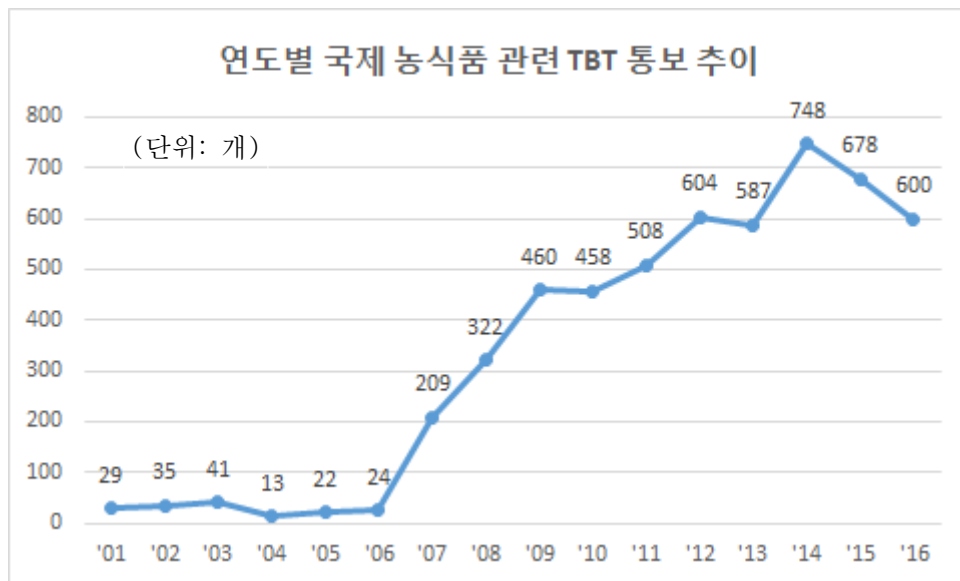
- 중국의 SPS 통보문은 2008년 멜라닌 조제분유 파동 이후 식품위생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2009년 중국의 식품위생 관련 최상위 법인 식품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과 관련된 하위 규제가 본격적으로 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법률적 체계화는 현재 진행 중임
  - 식품위생 안전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특정 국가만을 타겟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교역국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남

나. 농식품 관련 TBT 동향

(1) 국제적 농식품 관련 TBT 동향

■ 국제적으로 200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농식품 TBT통보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해마다 통보된 TBT 건수는 36개 미만으로 저조하였으나, 그 후 2014년까지 TBT통보 수가 748개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음

■ 2014년 이후로 2016년 10월 현재까지 TBT 통보 건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 수는 국제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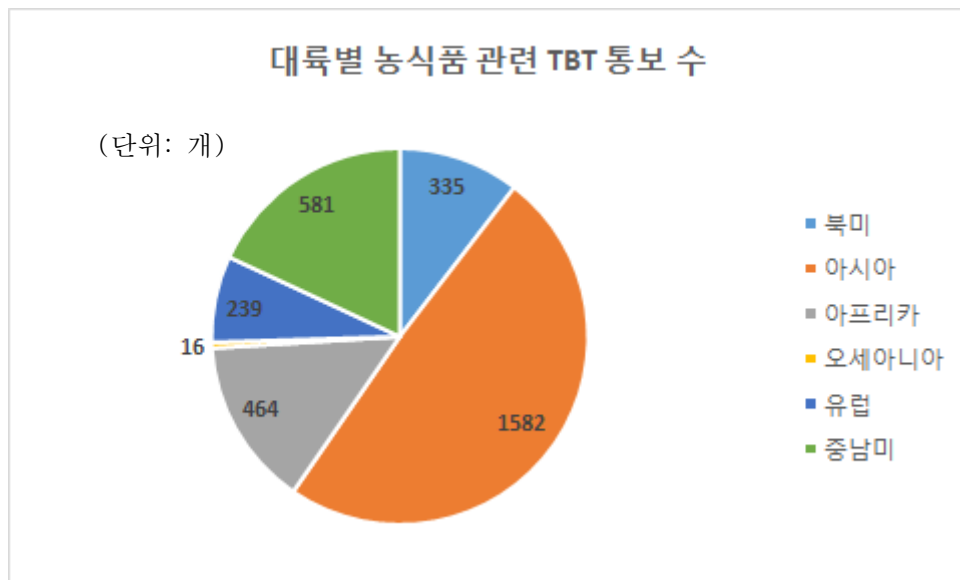
Source: KNOW TBT 홈페이지(<http://www.knowtbt.kr/>)

■ 최근 5년(2012~16년 10월)동안 대륙별 농식품 관련 TBT 통보 건 수는 총 3217건이며, 발생 빈도에 따라 아시아(1582건, 전체의 약 49.18%)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남미(581건, 18.06%), 아프리카(464건, 14.4%), 북미(335건, 10.41%), 유럽(239건, 7.42%), 오세아니아(16건, 0.50%) 순임

- 대륙별 포함된 국가의 수는 아시아 38개국, 중남미 31개국, 아프리카 44개국,

북미 3개국, 유럽 39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임

- 대륙별 국가 수를 감안했을 때, 국가당 TBT 통보 건수는 북미가 평균적으로 약 112개 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가 42 건, 중남미가 19건, 아프리카가 11건, 유럽이 7건, 오세아니아가 3건으로 파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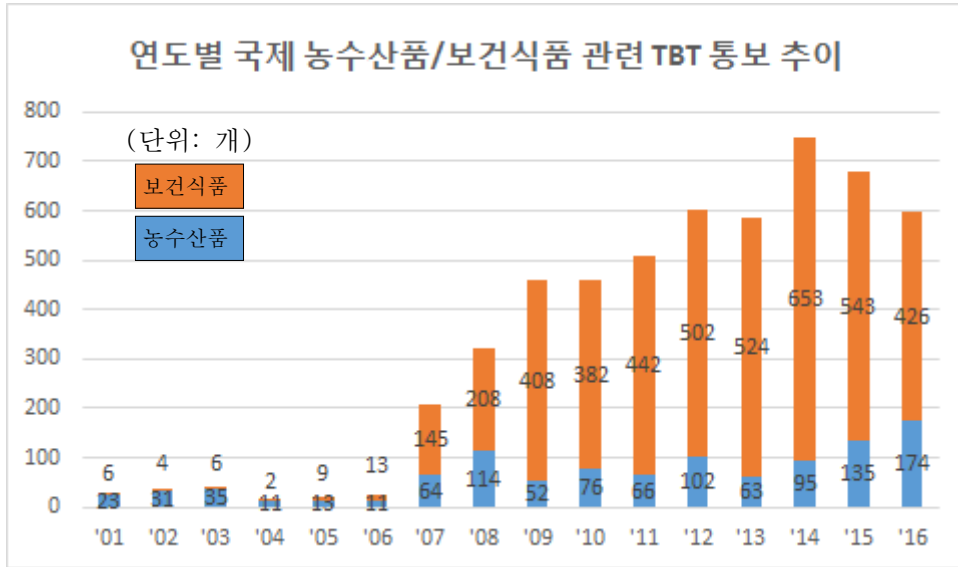


Source: KNOW TBT 홈페이지 (<http://www.knowtbt.kr/>)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 농수산물 관련 TBT 통보가 더 많았지만, 그 후 2007년부터 보건식품 관련 TBT 통보 건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 2016년 10월 현재까지 보건식품 관련 TBT 통보 수가 월등히 높음

- 2007년부터 2014년 동안 국제 보건식품 관련 TBT 통보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2014년 653개로 최고를 기록하였고 그 해에 기록된 농수산물 관련 TBT통보 수 95개보다 6.87배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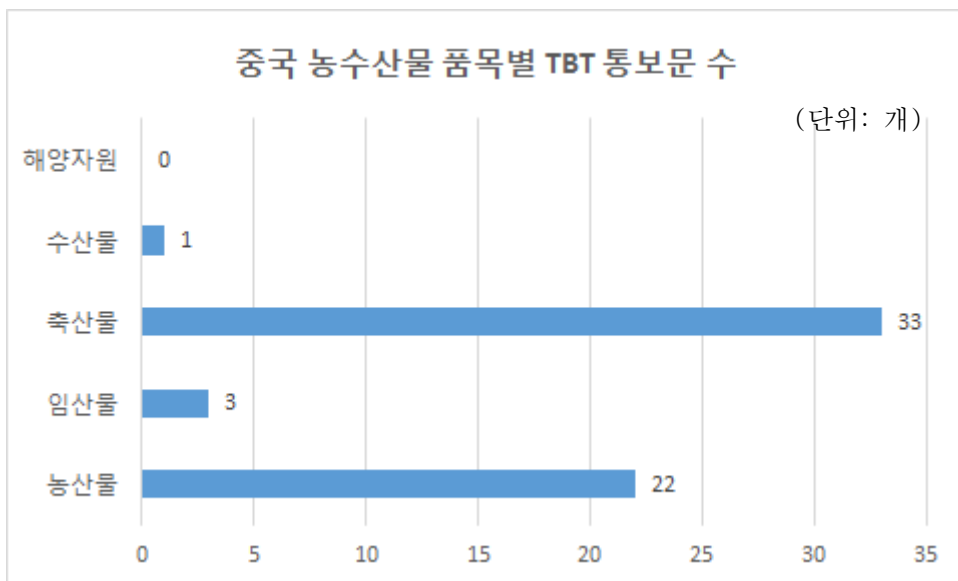
■ 그러나 일반 농수산물 관련 TBT통보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10월)까지 174개를 기록하면서 16년 동안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농수산물 관련 TBT 통보 건 수를 기록함



Source: KNOW TBT 홈페이지(<http://www.knowtb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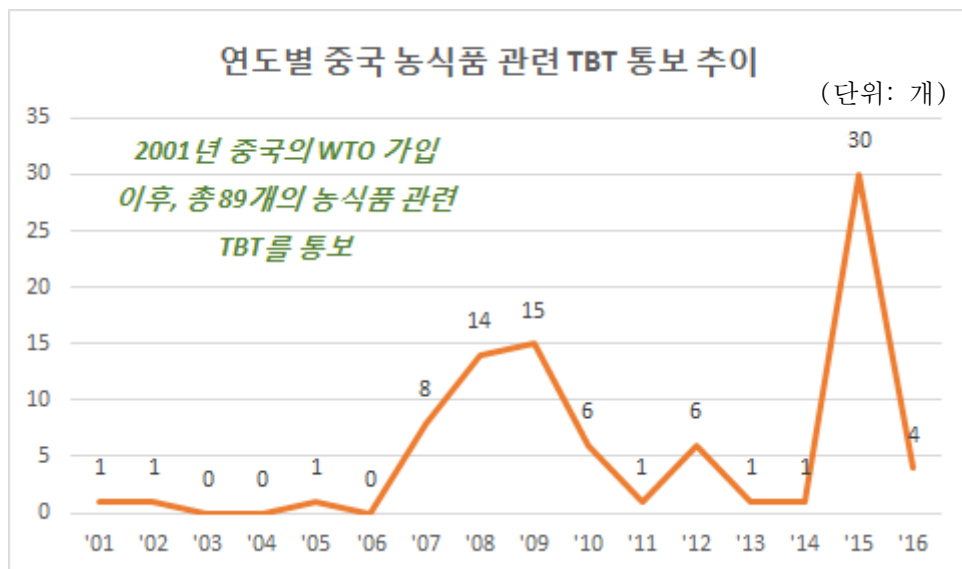
## (2) 중국의 농식품 관련 TBT 동향

■ 2002~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농수산물 TBT 통보문 수는 총 59건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축산물이 33개 (55.93%), 농산물이 22개 (37.29%), 임산물이 3개(5.08%), 수산물이 1개(1.69%), 해양자원은 전무함



Source: KNOW TBT 홈페이지(<http://www.knowtb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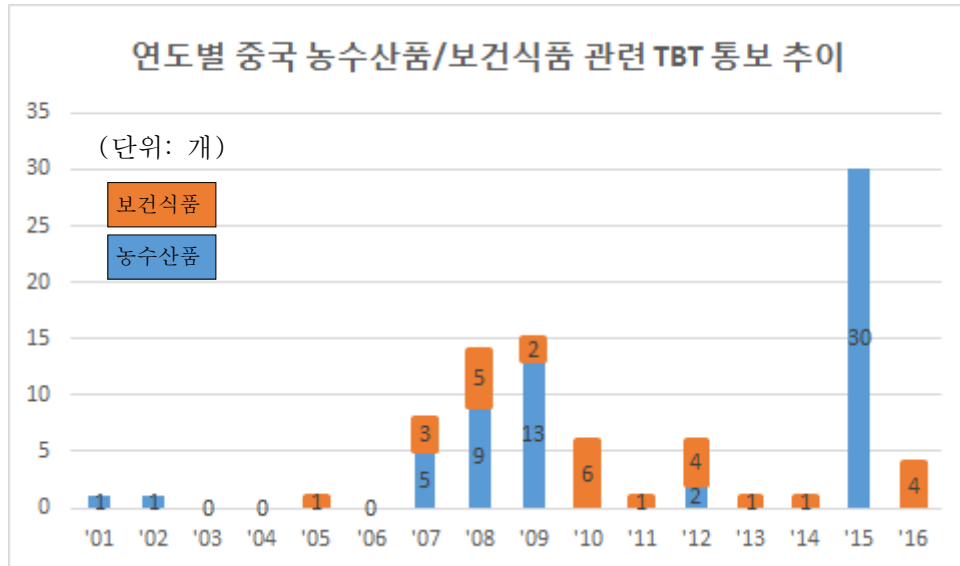
- 200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중국이 통보한 농식품 관련 TBT 통보문 89건에 대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2건 미만의 농식품 관련 TBT를 통보해 왔으며, 그 후 2007년부터 그 건 수가 점차 증가함
- 2007년~10년까지 중국은 43건의 농식품 관련 TBT를 통보해 왔으며, 2015년 한 해동안은 30건의 TBT를 통보하였음



Source: KNOW TBT 홈페이지(<http://www.knowtbt.kr/>)

- 200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중국은 농수산물 관련 TBT 60건, 보건식품 관련 TBT 31건을 통보하였음
- 2001년부터 2006년 동안 통보된 농수산물 관련 TBT는 2건, 보건식품 관련 TBT는 1건이었으며, 2007년부터 통보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함
  - 2007년~09년 사이 농수산물 관련 TBT 통보수가 5건에서 13건 까지 상승했으며 2015년에는 30건으로 최고를 기록함

- 2015년에 통보한 TBT 30건 중 29건이 축산물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나머지 1건은 수산물의 사료 첨가제에 대한 규정) 하였으며, 29건 모두 중국의 사료 첨가제에 대한 국가표준에 의한 통보임



Source: KNOW TBT 홈페이지(<http://www.knowtbt.kr/>)

- 중국의 TBT 통보 역시 SPS와 마찬가지로 2008년 식품 위생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보건식품과 일반 농수산물의 구분 없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중국의 식품안전법이 2009년 개정되고 그 세부 품목에 대한 식품 규제가 계속해서 수정됨에 따라 법적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단계로 TBT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1 중국의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 가. 중국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사례 검토 기준

## (1) 식품위생 법 및 조직의 과도기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해외 국가와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농식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중국 중산층의 소득수준 성장은 식품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2000년대 초 중국은 농식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었지만 규제의 실질적인 활용도는 상당히 낮아, 수출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이 매우 수월하였음
- 하지만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농식품 수입에 대한 체계적이지 않은 법적 규제 및 시스템의 성숙도가 낮아, 식품위생 안전이 문제의 현안으로 떠오름
  - 기존 「식품위생법(1995)」이 식품의 생산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2008년 멜라닌 분유파동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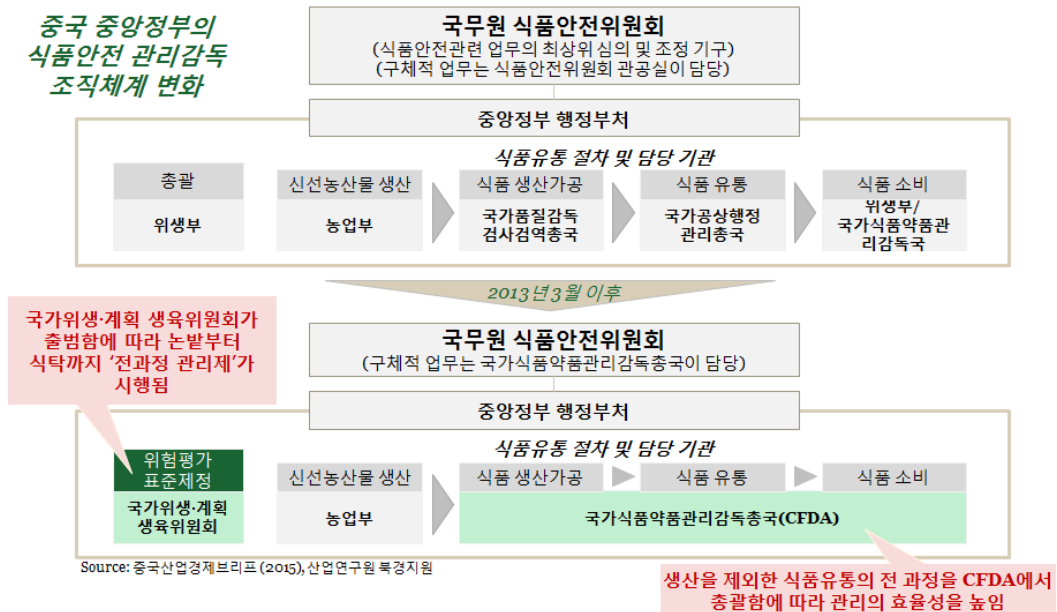
## &lt;중국 식품 안전 관련 법 제정 현황&gt;

중국 식품 안전 관련 법	설 명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 관리조례 (1979)	•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최초 행정법규로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제정한 규범성 문건
식품위생법 (1982)	• 식품위생법 첫 시행
식품위생법 (1995)	• 총 9장 57조로 구성 • 현 식품안전법의 전신
식품안전법(2009)	• 총 10장 104조로 구성 • 식품 단계별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분산형 감독체계를 명문화

Source: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방향 및 대응전략,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2015)

- 그에 따라 2009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였으며, 식품단계별 감독기관 명문화, 식품광고 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식품 리콜제도 등을 포함함
- 하지만 식품안전법의 강도 높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 위생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이 자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품이 급증하게 되었음
- 중국은 해외기업으로부터의 시장 침투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으며, 그에 따라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문제 역시 대두되기 시작함
  - SPS/TBT 조치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 이후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가 급증하기 시작함
-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중국 국민을 비롯한 정부는 식품 위생에 대한 문제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현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법은 가장 최상위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시행령들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므로, 수출기업은 반드시 시행령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중국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의 비효율적 감독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2013년 3월 이후 식품안전 관리감독 조직을 개편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우선 식품위생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논밭부터 식탁까지 “전과정 관리제”를 시행함
  - 또한 식품의 위생을 식품유통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하였으나, 국가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을 개설하여 식품의 위생을 식품이 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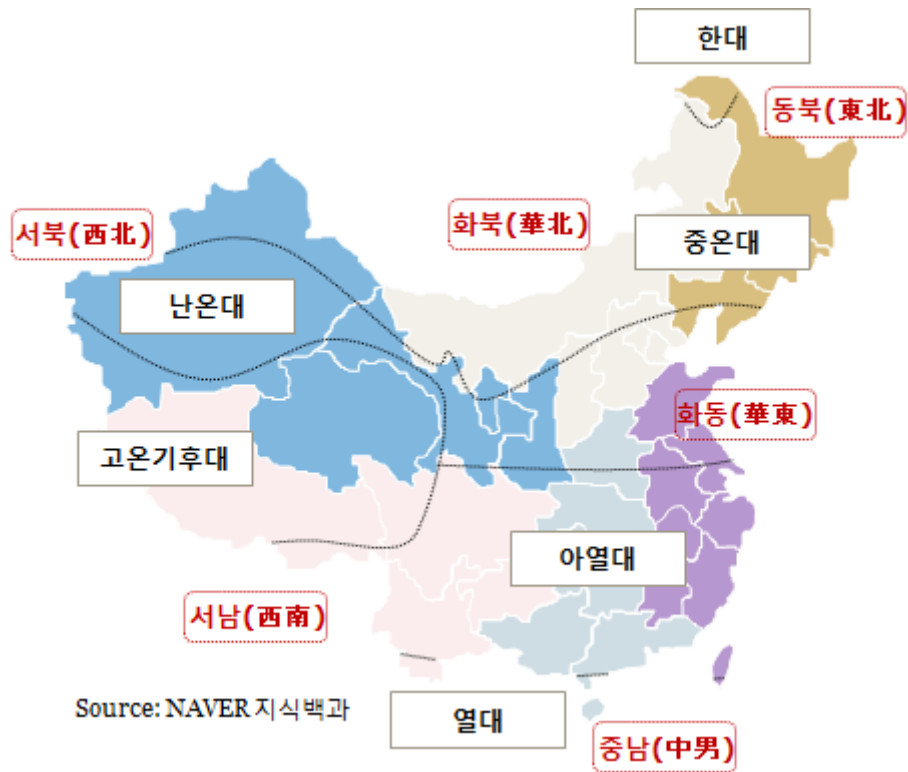




## (2) 중국의 지리적 요인 및 식문화 차이

- 중국은 지역에 따라 한온대, 중온대, 난온대, 고온기후대, 아열대, 열대기후 등 5 가지 기후로 구분됨
  - 동북 일부 지역의 한온대 기후대, 화북·서북 일부지역의 중온대 기후대, 서북·중남·화동 일부 지역의 난온대 기후대, 서남 일부 지역의 고온 기후대, 서남·중남·화동 일부 지역의 아열대 기후대, 서남·중남 일부 지역의 열대 기후대 임
- 대륙의 다양한 지리적 기후 차이는 자연스럽게 중국 농식품 규정에 대해 항구 및 지역별 차이로 이어짐
- 중국의 지리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지역별·항구별 농식품 규정의 차이를 모두 비관세 장벽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 사례 조사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남

■ 따라서 비관세장벽 사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별·항구별 규정 차이에 의한 비관세장벽 사례가 지리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활한 영토에 따른 지역별 기후 차이에 따라서 지역별 입맛 및 식문화의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취식하는 식재료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

- 중국의 북쪽에 위치한 화북, 동북 지역은 대체적으로 짜거나 맛이 강한 편이며, 서북은 상대적으로 종교의 영향을 받아 양고기 소비가 많은 편이며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적은 편임
- 화중, 화남, 서남 등 중국의 남쪽 지방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여 맵거나 짠 음식이 많음

<7대 권역별 입맛과 음식문화>

권역	특징
화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짠맛 선호, 강한 불로 빠르게 볶아내는 요리가 주종</li> <li>• (베이징 요리) 짠 맛이 강하며, 궁중·약선요리와 같은 고급요리 발달</li> </ul>
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자 연해에 위치하여 개방적 식문화</li> <li>• (상하이 요리) 풍부한 해산물 많이 사용, 대체로 달고 기름기 많음</li> </ul>
동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가깝고 거주 한인 및 교포가 많아 한국식품 인지도 높음</li> <li>• (동북 요리) 맛이 진하고 설탕과 간장을 많이 사용</li> </ul>
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륙지역으로 현지 재료를 많이 쓰며, 맵고 짠 맛이 강함</li> <li>• (후난 요리) 기름을 많이 쓰고 고추를 많이 넣어 매운 맛이 주종</li> <li>• (안후이 요리) 현지 재료 많이 사용, 색깔 및 재료 원래의 맛을 중시</li> </ul>
화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드럽고 시원하며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요리수가 다양함</li> <li>• (광둥 요리) 전통 요리에 서양 요리법 결합, 사용 식재료 가장 풍부</li> </ul>
서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리에 고추, 후추, 화초, 마늘 등이 들어가 자극적이고 매운 맛</li> <li>• (쓰촨 요리) 야생 동식물이나 채소류, 민물고기가 주재료</li> </ul>
서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된 환경, 열악한 기후 등으로 다양한 식문화 미발달</li> <li>• 종교의 영향으로 양고기 소비가 많으며 돈육, 수산물 소비는 적음</li> </ul>

Source: 중국 농식품 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4), KOTRA

(3) 중국의 민감한 농식품 위생안전 및 식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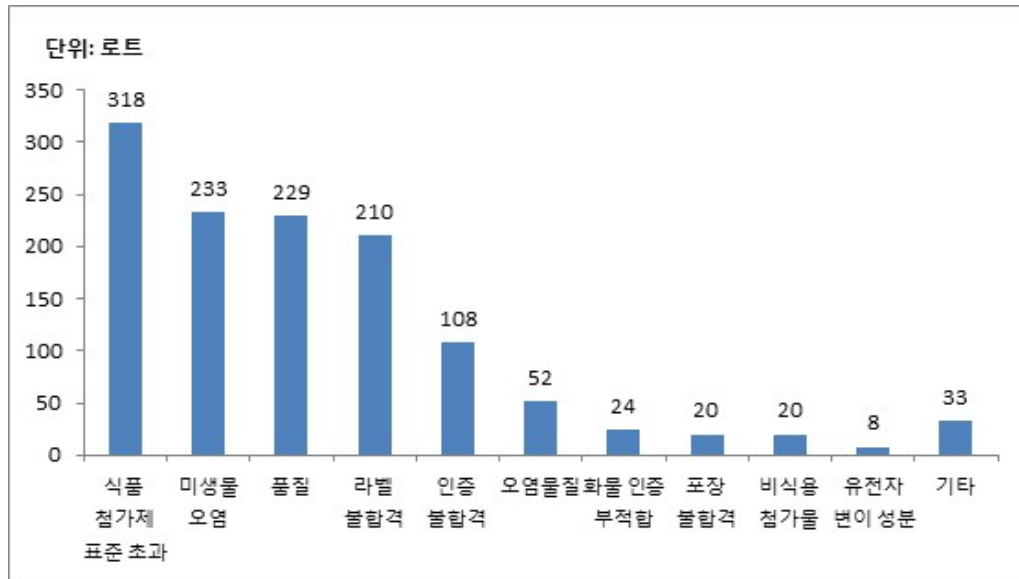
■ 멜라닌 분유파동은 2009년 식품안전법이 즉각적으로 개정시킴과 동시에 공안의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끊임없이 식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전이 제기됨

- 법 개정 이후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식품안전사고는 ‘멜라닌 독 분유(2008)’, ‘하수구 식용유(2014)’, ‘염색 만두(2011)’, ‘불법첨가제 고기(2013)’, ‘독 콩나물(2011)’, ‘쓰레기 고기(2014)’ 등 매우 다양함<sup>5)</sup>
- 개정된 위생표준에 미부합하는 농식품을 생산 및 판매한 중국 법원 판결 수는 2009년 148건, 2010년 119건, 2011년 333건, 2012년 1,08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5) 중국의 식품안전 정책 동향과 시사점

■ 그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해 정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며, 중국 정부 역시 식품 위생에 대한 검열을 매우 강화하고 있음

<2015년 상반기 수입식품 기준 미달 사유 현황>



Source: KTR (2016), 식품 중국 수출 가이드

■ 2015년 상반기 중국의 수입식품 기준 미달 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안전을 위한 원료 및 위생을 이유로 한 수입거부가 총 631건(전체의 약 50.03%)을 차지함

- 식품 첨가제 표준 초과, 미생물 오염, 오염물질, 비식용첨가물, 유전자 변이성분 등 수입식품 통관 거부 사유 중 대부분이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 돼 있음

■ 한편 중국은 경제성장에 더불어 최근 완화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농식품 시장이 해외 수입품에 잠식되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임

-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의 소득수준 및 구매력이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1978년 계획생육정책 법안에 의해 1980년부터 시행되어 온 중국의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이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완화됨에 따라 향후 농식품, 특히 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중국 정부는 식품 위생안전 검역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자국산 제품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을 이전 받는 것과 동시에 무분별한 농식품 유입으로부터 내수 시장을 보호하고자 함

### 멜라닌 분유 파동 (2008)

**멜라닌분유 파동은 자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수입식품**



07년 12월	중국 북서쪽 간쑤성에서 처음으로 요로 결석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 발견
08년 9월	중국에서 요로 결석과 신장 질환으로 아기 4명이 죽고, 1만명 이상이 입원
08년 9월 22일	중국 정부, 일부 분유 회사가 제품에 멜라민을 넣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

- 멜라닌 분유 파동 이후, 미미했던 식품 위생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대대적으로 행해짐
- 법개정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9년 식품안전법이 제정됨
- 식품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을 강화함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멜라닌 분유 파동은 중국의 식품위생 관련 법률 시스템 개선 및 식품위생 감독관리 강화의 시발점이 됨

2008.10.08	식품 중 멜라민 기준 설정 발표
2008.10.09	유제품품질관리감독조례 시행(불법 첨가물 금지)
2008.12.15	식품 불법 첨가물 리스트 발표
2009.02.28	식품안전법 제정(6월 1일자 시행)
2010.02.06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설립
2010.11.03	식품안전정보공개관리 규정 제정 및 시행
2011.04.02	유제품 생산기업 일제정비
2011.04.21	국무원, 식품 불법 첨가행위 감독관리 강화
2011.04.27	공상국, 식품 경영자에 대한 안전신용기록 작성
2011.04.2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첨가제 명시 의무화

나. 중국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검토 시 고려사항<sup>6)</sup>

- 농식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를 UNCTAD의 9가지 비관세 장벽의 유형<sup>7)</sup>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수입규제·수량제한, 표준 규격·검사제도, 수입통관, 관세 평가 및 수입 부가금, 운송 항만 이용, 기타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중국의 식품수입 컨설팅 기업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기준 사례를 실무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중, 비관세조치에 대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을 협의의 비관세장벽과 광의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비관세장벽의 정의는 ‘비관세 조치(즉 국가 간 거래물량이나 가격 또는 이 둘 모두에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관세 외 조치) 중 정부가 의도적으로 행한 조치’를 의미함
  - 그러나 비관세장벽을 광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적·지리적·시기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국민 및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한 합리적 규제까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 됨
  - 또한, 수출기업이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기술 돼 있으나 수출기업의 부주의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 역시 비관세장벽 사례로 보고되는 경향이 있음
  - 수출 상대국의 합리적 규제와 수출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비관세조치를 수출국의 정부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여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판단됨
  - 이에 중국 정부의 자국민 및 산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비관세조치를 광의의 비관세장벽으로, 그 외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가 아닌 비합리적 비관세조치를 협의의 비관세장벽으로 재 정의함

6) 유형에 대한 설명은 비관세장벽 포털 홈페이지(<http://ntb.kita.net/>)를 참고하였으며, 기준 사례는 각종 연구 보고서, 비관세장벽 포털, Kati 홈페이지, 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7) UNCTAD의 비관세장벽 분류를 기초로 한 비관세장벽 9가지 유형은 수입권한·자격제한, 수입규제·수량제한, 원산지 제도, 라벨링,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수입통관, 선진적 검사 및 영사확인제도,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운송·항만이용 등이 있음

### 기존 사례 검토를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유형

<b>1</b>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 따른 각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차이에 의한 피해 사례	<b>2</b>	해당 국가의 자국민 및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한 합리적 규제에 의한 피해 사례
<b>3</b>	수출기업의 부주의 및 규제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피해 사례	<b>4</b>	비관세조치의 남용 및 악용을 통해 교역량을 의도적으로 통제하여 발생한 피해 사례

→ 기존 비관세장벽 정의를 바탕으로 사례를 조사할 경우, “상대국의 합리적 조치 또는 수출기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와 “비관세조치의 남용 및 오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구분하기 힘들

비관세장벽의 조작적 정의 필요

“광의”의 비관세장벽	“협의”의 비관세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국 정부의 자국민 및 산업 보호를 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b>합리적 비관세조치</b></li> <li>기존 비관세장벽 사례 유형의 1, 2, 3 번째 유형이 해당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국 정부가 <b>비관세조치</b>를 악용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b>비합리적 비관세조치</b></li> <li>기존 비관세장벽 사례 유형의 4번째 유형이 해당됨</li> </ul>

비관세장벽을 ‘비관세조치 도입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광의의 비관세장벽 및 협의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검토 및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라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을 수립함

## 2 협의의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된 기준 사례 중, 재정의된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의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된 기준사례는 총 10개임

■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입 통관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해소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함

<협의의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요약>

번호	품목	비관세장벽 유형	내용 요약	해소 여부	해소방법
1	생우유	수입규제·수량제한	• 생우유 품목에 대해 자동수입허가제도를 적용하여 구제역 발생 시, 사전 고지 없이 자동으로 생우유 수입 허가증을 요구	-	-
2	유제품	수입규제·수량제한	• 유제품생산업체(품목)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된 업체에 한해 수출 허용	-	-
3	식품 전반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의 식품 검사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의 검사기관 이용에 대한 비효율적 시간, 비용 추가	-	-
4	특정 품목	수입통관	• 세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품목기준이 다른 품목기준으로 변경	-	-
5	마른 미역	수입통관	• 마른 미역을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식품, 중국 식약청은 수산물로 분류하여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	-	-
6	주류	수입통관	• 소주, 맥주 라벨링 도수 표기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상하이는 대문자 VOL, 충칭은 소문자 vol)	-	-
7	주류	수입통관	• 제품 외포장에 'FRESH', 'COOL' 등 추상적인 문구에 대한 증명서 요구	-	-
8	김치	수입통관	• 검역 담당자가 발효김치를 자의적으로 절임채소로 구분함에 따라 '대장균군 30마리' 기준 적용	해소	객관적 자료 제출/검역담당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9	인삼 가공품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 실제 제품에는 인삼 함유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검역 담당자가 '고려인삼은 비싼 품목'이라는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신고가격을 높게 책정하도록 요구	-	-
10	식품 전반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 증치세에 대한 환급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한국: 익월 10일까지, 중국: 수출일로부터 30일~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잡음에 따라,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떨어짐에 따라 기회비용 발생	-	-



(1) 수입규제 · 수량제한

■ 수입규제 · 수량제한 유형의 세부 분류 항목 중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조사된 항목은, ‘자동수입승인(Automatic I/L)’이 있음

- 자동수입승인(Automatic I/L)은 특정 사유가 없는 한 I/L(수입허가서)을 자동 발급하고 있으나, 종종 부당하게 발급을 지연시키거나 수출조건을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임

사례 1.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우유</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생우유 품목에 대해 자동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여,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사전 고지 없이 자동으로 생우유 수입 허가증을 요구함</li> <li>• ‘자동수입허가제도’의 의미는 수입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수입업체에 묻겠다는 것을 말함</li> <li>• 국내기업이 해당 제도의 허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 또는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소요 시간에 의한 손실가치가 큼</li> <li>• 멜라닌 파동 이후 유제품에 대한 식품 규정이 매우 엄격해졌으며, 문제가 발생한 식품과 수출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li> <li>• 이를 악용하여 허가를 받기위한 절차와 비용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하는 경우, 비합리적 비관세장벽에 해당될 수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역 발병 등을 이유로 한 수입의 제한은 합리적 조치이지만, 수입 허가 등록을 위해 1년에서 최대 3년이 소요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2.**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제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제품생산업체(품목)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된 업체에 한해 수출 허용</li> <li><b>사례1</b> 참고</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사례1</b> 참고</li> </ul>

(2) 표준 · 규격 및 검사제도

■ 표준 · 규격 및 검사제도에 해당하는 기존의 농식품 비관세장벽 사례는 ‘타국 검사 기관에 의한 검사대행 불인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타국 검사 기관에 의한 검사대행 불인정은 자국 소재 검사기관 이외에 타국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수출 상대국의 검사를 다시 받음으로써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이 발생함

**사례 3.**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전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요 검사기관에 대해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 성적서를 인정하지만,</li> <li>중국은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 한국의 검사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음</li> <li>공인검사기관의 식품 검사에 대한 동등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차원에서 해소하기 힘든 비관세 장벽의 유형으로 판단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인검사기관을 불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li> </ul>

(3) 수입통관

■ 수입통관 유형의 경우, 비관세장벽 기존 사례에서 나타난 세부 항목으로 ‘과다한 서류요건, 자의적 심사 기준’이 나타남

- 자의적 심사 기준은 해외통관 시 지역별, 현지 세관별, 담당자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 지연이나 혼선을 야기하며, 제품에 대한 신고 가격에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발생함

사례 4.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품목</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 담당자가 교체됨에 따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분류되던 식품분류에서 유제품으로 변경 돼 높은 과세가 적용됨</li> <li>• 중국의 표준규격이 존재 하지 않는 한국 식품이 상당히 많아 제품의 특징을 이해력이 부족한 검역 담당자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 간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의 특징을 이해하여 품목분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통관 담당자가 주관적 견해를 통해 자의적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5.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른 미역</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른 미역에 대해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한국 식약처의 위생허가증에 근거하여 식품으로 판단하였으나,</li> <li>• 중국 식약청에서는 수산물로 판단하여 기관의 소관 및 책임 떠넘기기로 2~3달 동안 통관 지연이 발생하였고, 결국 제품 폐기 조치를 당함</li> <li>• 규정에 대한 담당자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표준규격에 따른 품목분류가 다를 수 있으나,</li> <li>•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통관 담당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분류를 명확하게 해야 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례와 같은 피해 사례는 품목분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통관 담당자의 비합리적인 태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li> </ul>

- 제품의 외포장에 기입된 문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추상적 문구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례 6.**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 맥주 라벨링 도수의 영문 대소문자 표기(VOL, vol)에 있어서, 상하이는 대문자 VOL로, 증칭은 소문자 vol로 표기할 것을 요구함</li> <li>• 대소문자와 같은 사례들이 라벨링 규정에 의한 비관세 장벽 사례들로서 의외로 자주 보이지만, 라벨표기의 사소한 것은 라벨링 규정에 하나하나 기재되어 있지 않음</li> <li>• 즉, 해당 항구 및 지역의 검사 담당자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할 수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소문자의 구분과 같이 매우 세세한 내용을 모두 규정에 언급할 수는 없으나,</li> <li>• 사례와 같은 비합리적인, 사소한 것들로 발생하는 피해가 여러 차례 보고가 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함</li> </ul>

**사례 7.**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에 'FRESH', 'COOL' 등을 표기할 경우, 해당 제품이 왜 신선하며 시원한지 증명할 것을 요구</li> <li>• 추상적 문구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라벨을 바꿔야 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함</li> <li>• 중국의 라벨링 규정은 GB<sup>8)</sup>2760-2014(식품첨가제에 대한 통칙으로 성분표기에 관한 규정)와 GB7718-2011(라벨링 규정)이 있으며, 이 두 규정은 중국산에도 동일하게 적용</li> <li>• 포장지에 기입된 문구를 통한 과장 홍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제품에 표기되는 문구를 증명할 것을 요구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상적인 문구와 같이 매우 세세한 내용을 모두 규정에 언급할 수는 없으나,</li> <li>• 사례와 같이 추상적인 문구에 대해 모든 설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로 판단됨</li> </ul>

8) GB는 병음 앞 글자를 약자로 딴 국가표준(国家标准, Guo jia Biao zhun)의 약어이며, GB 뒤에는 규정의 일련번호와 시행연도가 따름

- 국가표준이 부재한 경우, 검역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제품을 평가하여 수출 제품에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어 입게 되는 피해 사례도 있음

**사례 8.**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발효김치에 대한 국가표준이 없어 수입업체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사규정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간의 자의적으로 ‘절임채소’ 기준을 적용</li> <li>• ‘절임채소’ 기준은 대장균균 30마리 이하(100g 기준) 항목이 있어 발효김치에 적합하지 않음</li> <li>• 수출 제품의 품목에 대한 지방 및 지역표준이 부재한 경우, 수입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품의 유사 품목을 결정해야 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역 담당자의 주관적 의견에 의해 자의적으로 ‘절임채소’ 기준을 적용한 비합리적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li> </ul>

(4) 관세 평가 및 수입부가금

■ 비관세 장벽에 대한 기존 사례의 관세 평가 및 수입 부가금 유형의 경우, 세부 항목으로서 ‘실거래 가격 불인정 및 자의적 평가, 차별적인 수입 부가금’의 항목이 나타남

- 세관 담당자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거래 가격을 불인정하고, 주관적 평가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신고가격을 책정하여 관세를 부과함

사례 9.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삼 가공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삼음료의 경우, 검역 담당자가 ‘고려인삼은 비싼 품목’ 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임의적으로 신고가격을 높게 조정함</li> <li>신고가격이 높으면 관세 등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이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짐</li> <li>통관 항구 및 지역마다 통관이 완료된 품목의 가격 리스트를 관리하며, 그에 따라 유사품목을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음</li> <li>따라서 인삼 가공품에 대한 통관 이력이 없는 경우, ‘인삼’ 가격을 기준으로 담당자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의 유형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인삼’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판단됨</li> </ul>

- 수입품에 대하여 자국산과 차별적인 조세나 각종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이 금전적 손해를 겪게 되는 사례가 있음

사례 10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전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은 수출상품에 대한 증치세(부가세) 환급기간을 “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수출일로부터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길게 책정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떨어짐</li> <li>통관하는 세관에 따라 환급률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함</li> <li>한국의 경우, 익월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환급지연에 대해 이자를 포함하여 지불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증치세 관련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li> </ul>

### 3 광의의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 비관세 장벽의 기준 사례 중, 광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재분류된 사례는 총 18개이며, 수입규제·수량제한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해소된 사례는 총 3건이며, 모두 수입규제·수량제한 유형에 속하고 정부의 노력으로 해소되었음

<광의의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 요약>

번호	품목	비관세장벽 유형	내용 요약	해소 여부	해소방법
11	신선과일 품목	수입규제·수량제한	• 중국은 포도 외 모든 한국산 신선과일 품목의 수입을 금지	일부 해소	정부 협상
12	동충하초	수입규제·수량제한	• 동충하초에서 비소가 과다 검출됨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	-	-
13	우유	수입규제·수량제한	• 기존 생우유, 생유제품, 저온살균 우유에 적용되던 규제를 저온살균 조제우유로까지 확대 적용	-	-
14	쌀	수입규제·수량제한	•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중국이 지정한 미곡처리장에서 생산된 쌀 중 한정된 물량만을 허용	일부 해소	정부 협상
15	열처리 축산 가공품 (삼계탕)	수입규제·수량제한	• 14년 획득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모든 한국산 육류 수입 금지(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후 몇 개월 만에 구제역 발발, 정부의 노력으로 삼계탕 수출 가능해짐)	일부 해소	정부 협상
16	특정 품목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비타민C, 인, 셀레늄, 요오드, 엽산 등 몇몇 항목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의 검사 방법이 상이하여 검사 결과에서 차이 발생(한국 검사방법 미인정)	-	-
17	특정 품목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한국 기관에서 수행 불가한 항목에 대해 중국의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 할 것을 요구	-	-
18	음료, 주류	수입통관	• 가소제 규제가 생김에 따라, 가소제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 검사 보고서 요구	-	-
19	식품 전반	수입통관	• 중국 수출통관 시 많은 시간 소요	-	-
20	식품 전반	수입통관	• 까다로운 외포장 비인등록절차 및 통관지연으로 인한 비효율적 시간소요	-	-
21	어묵	수입통관	• 검역 담당자가 제품에 대한 특수위생 허가자료 추가 요청	-	-
22	식품 전반	수입통관	• 수입 검사기관 검역국과 유통제품 검사기관 공산국 간 제품의 평가 기준 상이	-	-

23	식품 전반	수입통관	• 제품 수출을 위해 등록된 품목은 등록 지역에서만 유효하며, 타 지역을 통해 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제품을 재등록	-	-
24	조미김, 젓갈	수입통관	•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이 없어, 검역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규정 적용	-	-
25	보건(기능) 식품	수입통관	• 보건(기능) 식품에 대해 의약품에 준하는 CFDA 위생허가 요구	-	-
26	특정 품목	운송·항만 이용	• 특정 품목에 대해 통관항구를 지정하여 운송비 상승	-	-
27	역직구 전자상거래 품목	기타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역직구 품목에 대해 관세제도 개정	-	-
28	전통주	기타	• 식품라벨 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라벨 변경	-	-

### (1) 수입규제 · 수량제한

■ 수입규제 · 수량제한 유형의 세부 분류 항목 중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조사된 항목은, ‘수입금지, 자동수입승인<sup>9)</sup>,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감시제’로 분류됨

- 수입금지는 특정품목에 대해서 중국 산업을 보호하고 식품 위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그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음

#### 사례 11.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과일 품목</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포도를 제외한 한국산 신선 과일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li> <li>• 포도의 경우 식물검역요건 합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과수원과 가공공장에 한해 수출이 가능함</li> <li>• 신선 과일 품목은 한국과 중국 모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자급자족하고 있어, 수출기업 차원에서 신선 과일 품목에 대한 교역을 추진하기가 어려움</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일부 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자국의 농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전 세계 국가들도 신선식품의 수입에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li> </ul>

9) 제2절 2-(1) 수입규제·수량제한 참고



사례 12.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충하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충하초에 함유된 비소가 과다 검출(4.4~9.9mg/kg) 됨에 따라 동충하초를 사용한 건강보조식품 생산을 허용하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법령 제 22호 「동충하초사용보조식품 시범공작방안」 이 중단됨에 따라 對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짐</li> <li>• 중국은 정부와 소비자 모두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에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국산 동충하초의 비소가 과다 검출 돼 발생된 조치임</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위생에 문제가 되는 비소의 과다검출로 인한 문제로 해당 사례는 당국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로 판단됨</li> </ul>

- 자동수입승인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이 유제품 내에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있음

사례 13.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유</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는 수입산에 대한 식품안전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중국 낙농업 보호를 취지로, 기존 생우유, 생유제품, 저온살균 우유에 적용되던 규제를 저온살균 조제우유로까지 확대 적용함</li> <li>• 2009년 멜라닌 과동 이후, 식품안전을 위해 생우유, 생유제품, 저온살균 우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개정되었음 (사례1 참고)</li> <li>• 한편,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우유에 대한 선호가 극도로 떨어지고 맹목적으로 수입우유를 구매함에 따라, 수입산에 의한 식품안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기에,</li> <li>• 중국 정부에서는 수입산 저온살균 조제우유로까지 품목을 확대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에 의하면, 자동수입허가제를 수입산 저온살균 조제우유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기술 돼 있으나,</li> <li>• 중국 현지 수입업체에 의하면 자동수입허가제는 자국산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li> <li>• 따라서 수입산과 자국산 간 자동수입허가제의 적용 강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비합리적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으므로 현 사례는 광의의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됨</li> </ul>

-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감시제는 특정 지역을 수입 감시 지역으로 정해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하며, 그에 따라 수입쿼터 제도를 적용하여 중국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임

사례 14.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도입된 유해생물위험분석에 한국산 쌀이 검역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출이 불가능했으나, 한중FTA 협상과 함께 실시된 주요 쌀 수출 작업장 검역 실사로 한국산 쌀 수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짐</li> <li>• 경기 이천 남부농협쌀조합, 충북 청주 광복영농조합법인, 충남 서천농협쌀조합, 전북 군산 제회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처리장에 한해서 수출이 가능하며,</li> <li>• 한 해 동안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532만 톤으로 제한 돼 있음</li> <li>• '쌀'은 중국의 주식으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제가 매우 심한 품목 중 하나이며, 과거 한국산 쌀에서 유해 물질이 적발됨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음</li> <li>• 하지만, FTA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극히 제한적이지만, 중국의 관료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일부 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자국 쌀 산업 보호와 유해물질로부터의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됨</li> </ul>

사례 15.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처리 축산 가공품 (삼계탕)</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 14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중국은 여전히 삼계탕을 제외하고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등을 이유로 모든 축산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하고 있음</li> <li>당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긴 했지만, 단 2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병함으로써 지위가 박탈되었으며,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li> <li>그럼에도 한국정부가 삼계탕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함에 따라, 한중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삼계탕 통관검역 조정 의정서에 합의하였고,</li> <li>중국 정부가 삼계탕을 생산하는 한국의 6개 공장을 심사하여 현재 지정된 공장에서 생산된 삼계탕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함</li> <li>하지만, 그 외 축산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생산 공장이 많지 않아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의의 비관세 장벽(일부 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산 축산물의 경우, 구제역 및 광우병 등의 축산질병에 노출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수출금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li> </ul>

(2) 표준 · 규격 및 검사제도

■ 표준 · 규격 및 검사제도에 해당하는 기존의 농식품 비관세장벽 사례는 주로 ‘타국 검사 기관에 의한 검사대행 불인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협의의 비관세장벽 기준 사례에서 소개된 것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의 검사 기관에서 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검사 결과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있음

사례 16.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품목</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방법이 상이해 국내에서 검출되지 않은 성분이 중국 검사과정에서 검출 되는 사례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타민C,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를 적용하나,</li> <li>- 중국에서는 형광분광도, 미생물법으로 검사</li> </ul> </li> <li>○ 인, 셀레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는 ICP, ICP/MS 적용 시험법을,</li> <li>- 중국은 스펙트로포토미터, HG-AFS 검사</li> </ul> </li> <li>○ 요오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는 알칼리 분해 후 이온전극법을,</li> <li>- 중국은 제품에서 추출 후 GC-ECD 적용</li> </ul> </li> </ul> </li> <li>• 식품에 적용되는 규정은 한국 제품을 포함한 수입품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민에 적합하게 고안된 검사 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식품 위생안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li> </ul>

- 한국의 검사 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중국의 지정 검사기관에서 수행토록 요구함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사례 17.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품목</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제품에 한해, 한국 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검역을 중국 현지 지정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요구함</li> <li>• 식품의 특정 항목에 대한 검사가 중요한 경우, 중국 현지 지정 검역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li> <li>• 해당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검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검역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취지로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됨</li> </ul>

(3) 수입통관

■ 수입통관 유형의 경우, 비관세장벽 기존 사례에서 나타난 세부 항목으로 ‘과다한 서류요건, 자의적 심사 기준’이 나타남

- 수입 제품에 대해 검역 담당자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있음

사례 18.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 주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주류에 대한 제도 변경으로 가소제 성분 관련 규제가 생겼으며,</li> <li>• 이 규정이 중국에서 이슈화 되었고, 중국 정부는 한국산 음료·주류 수출 기업에게 수출 품목에 대한 가소제 검사 보고서를 요구함</li> <li>• 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식품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해당 사례는 자국 내 식품위생 이슈로 인한 제도임</li> <li>• 제도 변경 시, 중국 정부는 약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모든 수출입 기업은 수출 제품에 대한 정부 규제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가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의 개정 목적은 제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품의 위생과 안전을 목적으로 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19.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전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중국 농식품 수출 시 통관(위생증 수령 포함)까지 많은 시간 소요</li> <li>• 항구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첫 수출 품목의 경우 길게는 약 2개월 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li> <li>• 농식품은 유통기한이 중요하며, 복잡한 통관 절차 및 검사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비용 증가</li> <li>• 검역 단계는 제품에 대한 위생, 안전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도 검역국의 담당자가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서나 보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통관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품에 대한 수입이력이 없는 지역향의 경우 제품을 더 신중하게 검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제품에 대한 이해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20.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전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도 출입국검험검역국의 경우 외포장 비인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업무진행이 느림(1개 제품 신청 시 1-3개월 소요)</li> <li>• 통관 지연으로 인해 수입업체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며, 제품의 유통기한 결과로 금전적 손실 발생</li> <li>• 중국의 지리적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지역적·문화적·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통관검역 절차가 상이하여 비관세장벽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li> <li>• 또한 규정에 대해 지역 담당자마다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각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지리적 요인에 의해 상이한 지역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검역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li> </ul>

사례 21.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묵</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질량감독검험총국은 해조류 함량 50% 이상인 어묵제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해양수산부의 위생증에 더해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특수위생허가증을 요구함</li> <li>• 검역 단계는 제품에 대한 위생, 안전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도 검역국의 담당자가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서나 보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통관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이 이전에 문제없이 수출이 되었을 지라도, 검역 당국이 갑작스럽게 요청하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임</li> </ul>

- 자의적 심사 기준은 해외통관 시 지역별, 현지 세관별, 담당자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 지연이나 혼선을 야기함

사례 22.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전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시 검사기관인 검역국과 유통 시 검사기관인 공상국 간 규정이 상이함</li> <li>• 수입 시 통관절차가 문제없이 진행 돼 마트에 유통됐으나, 공상국의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 돼 제품 회수 조치로 손실을 입음</li> <li>• 규정은 동일하나, 수입 시 모든 항목을 체크하기 어려워 주요 항목만 체크하는 반면, 공상국은 주기적으로(또는 파파라치제도<sup>10</sup>)에 의한 제보로) 유통된 품목을 무작위 선정해 식품규정에 따른 항목을 모두 체크함</li> <li>• 이 과정에서 수입 시 통관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다라도 유통 단계에서 판매 제제를 받는 경우가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식품의 경우 모든 제품의 모든 검사항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li> </ul>

사례 23.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전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식품 수입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li> <li>• 발급받은 등록증은 특정 지역의 검험 검역국에서만 유효하며, 타 지역에서는 인정하지 않음</li> <li>• 지역별 등록증을 모두 받기에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따름</li> <li>• 중국은 ‘대륙’으로서 지역마다 문화적, 기후적 특징이 모두 다르며, 지역 주민들의 성향 역시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기업은 지역적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지역적 특색에 따라 통관검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li> </ul>

사례 24.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미김, 젓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미김과 젓갈은 한국 식품으로서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 규격이 부재함</li> <li>• 중국 검역 담당국에서 조미김은 국가표준 GB10133-2005(수산조미품), 젓갈은 GB19643-2005(해조류제품)으로 적용함</li> <li>• 한국산 젓갈, 조미김은 비가열제품으로 해당 규정에 적용했을 때 일반세균 및 대장균 군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위생규격에 부적합함</li> <li>• 한국산 조미김과 젓갈의 경우 중국 국가표준, 지방 및 지역표준이 부재하여 수입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품이 어느 제품과 유사한지 결정해야 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및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산 식품을 중국의 국가표준 및 기업/지방 표준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모든 품목을 등록하기에 제약이 크므로,</li> <li>• 다만 적용되는 규제를 검역 담당자의 주관적 의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비합리적인 조치임</li> </ul>

10) 파파라치 제도: 국내외 식품에 대해 결함을 발견하여 제보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 보건(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에 준하는 까다로운 검역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상당하며, 그로 인해 보건(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따름

사례 25.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기능) 식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기능)식품에 대해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과 CFDA 위생허가가 필요함</li> <li>• 보건(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li> <li>• 또한 규정에 대해 지역 담당자마다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각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이 이전에 문제없이 수출이 되었을 지라도, 검역 당국이 갑작스럽게 요청하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임</li> </ul>

(4) 운송 · 항만 이용

■ 비관세장벽 기존 사례 중 운송 · 항만 이용에 관한 유형의 경우, 세부항목으로 ‘수입항구 제한’으로 인한 수출 애로를 겪고 있음

-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항구를 별도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여 피해 받게 되는 사례가 있음

사례 26.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품목</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품목에 대해 통관항구를 지정하여 해운 노선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비용 상승 및 효율적 운송을 저해함</li> <li>특정 통관항구를 지정하는 것이 비관세 장벽일 수 있지만,</li> <li>한편으로, 특정 항구를 지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해당 품목에 대한 통관검역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폐기 및 환수 당할 위험이 낮을 수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과 달리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지역/항구마다 문화적, 지리적, 인구특성에 따라 품목 규정을 해석하는 바가 상이함</li> </ul>

(5) 기타<sup>11)</sup>

■ 조사한 비관세장벽 사례 중 비관세장벽 유형에 속하지 않는 두 사례를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모두 규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임

사례 27.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직구 전자상거래 거래 품목</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직구로 불리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함</li> <li>약 1,300개의 제품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행우세’ 제도를 폐지하고 관세에 소비세와 증치세의 70%를 더해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함</li> <li>특히 화장품이나 영유아 조제분유, 건강식품 등 위생허가가 필요한 전자상거래 상품은 앞으로 일반무역관세 적용을 받으며, 원산지 증명서, 제품검사보고서, 위생증명서, 중문라벨 등 통관서류를 제출해야 함(1년의 유예기간 적용)</li> <li>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 및 중국 상품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적용된 제도임</li> <li>제도가 적용되었지만 유예기간인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제도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정부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개편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됨</li> </ul>

11) 조사한 비관세장벽 사례 중 브랜드와 관련해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피해 사례가 있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로 판단하기 어려워 다루지 않음

사례 28.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주</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2011년 6월 수출입 식품라벨 관리방법이 개정되어 스티커 라벨 부착을 금지</li> <li>• 또한 특정 항구에서 라벨 기준이 변경된 후, 2~3개월 이후 부터는 기존 라벨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 존재</li> <li>• 두 개의 규정으로 인해 전통주 제품은 종이 라벨을 부착하지 못해 모든 물량 폐기</li> <li>• 중국의 라벨링 규정(GB7718-2011)은 2010년에 공포되고 약 1년 정도의 유예기간 후인 2011년부터 시행되었음</li> <li>• 중국 정부가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 수입업체에 모두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된 피해 사례로 판단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가 모든 수출기업에게 규정 변경을 통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통보의 의무 역시 없음</li> <li>• 규정의 개정 목적은 제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품의 위생과 안전을 목적으로 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li> </ul>

## 4 ..... 중국의 주요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주요 기존 사례

■ 중국의 주요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비관세장벽의 유형은 물론 비관세조치 시행 배경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sup>12)</sup>

■ 이는 중국의 규제가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다가보다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1) 수입규제 · 수량제한

■ 중국의 주요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사례 중 대부분은 수입규제 · 수량제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병원균·곰팡이 등 식품 위생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 ‘수입금지’ 조치 피해 사례가 많았음

-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관세조치와 마찬가지로 육류에 관한 이슈가 많았으며,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빈번하게 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함
- 중국 정부의 식품위생문제를 근거로 한 수입규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중국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사례가 많았음

#### 사례 1.

국가명	• 미국
품목명	• 아보카도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던 California 산 아보카도에 대해 2013년 7월 수입규제의 완화를 통보하였지만, 그 후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li> <li>• 미국은 중국에게 병충해 리스트를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중국 시장의 아보카도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li> </ul>

12)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 비관세장벽 유형 및 사례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은 중국 수입 컨설팅 전문 업체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

사례 2.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고기</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12월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쇠고기 제품, 쇠고기, 생우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음</li> <li>• 2006년 6월 말, 광우병에 대한 논란 속에서 세 번의 협정 후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뼈가 제거된 쇠고기를 제외하고, 미국에게 제한적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함</li> <li>• 그러나 한 달 후, 중국은 소고기 수입 규제에 관련한 조항을 22개로 늘림에 따라 수입을 억제시키는 조치를 시행함</li> <li>•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14년 7월, 중국은 미국 쇠고기의 재수입을 결정함</li> <li>• 쇠고기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지만, 22개의 조항 중 상당수는 광우병의 위험성과는 무관하였으며, 이는 규제 완화에 따른 중국의 새로운 비관세조치인 것으로 판단됨</li> </ul>

사례 3.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기</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California 산 딸기에 대해 중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을 요청하였고,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검역총국(AQSIQ)은 베이징 올림픽 시즌 동안 수입을 일시적으로 허가하였음</li> <li>• 당시 중국 검역 당국은 미국 산 딸기에 대한 위생의 안전함을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수입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지 않고 있음</li> <li>• 중국은 미국 산 딸기의 수입 규제 완화 지연에 대한 정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질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임</li> </ul>

사례 4.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류 및 가금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진과 같은 병원균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가금류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li> <li>• 2009년, 중국은 해당 규제에 대해 개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통보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li>• 식음료 위생 전문가에 따르면 살모넬라와 같은 병원균을 육류에서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병원균이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을 상당히 감소시켜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함</li> <li>• 따라서 미국은 병원균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중국의 비합리적 비관세조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li> </ul>

사례 5.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미국의 LPAI 발병 주에서 생산되거나 해당 주를 통과하는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li> <li>• 한편, 2013년 미국 Arkansas에서 생산된 가금류에 대한 규제를 해제함에 따라 중국으로의 가금류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해제 후 2개월 만에 다시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함</li> <li>• 중국에서 시행 중인 AI와 관련된 수입 규정은 과학적이지 못하며, Animal Health 관련 국제 기구인 OIE의 교역 지침서와 불일치함</li> <li>• 2013년에 개최된 양자간 협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 되었지만, 여전히 비관세조치는 풀리지 않고 있음</li> </ul>

사례 6.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과</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부터 중국은 부란병(fire blight)을 이유로 Idaho, Oregon, 그리고 Washington에서 재배되는 2 품종의 사과의 수입만을 허가하고 있었음</li> <li>• 미국은 2000년부터 California 사과의 중국 수출을 추진하고자 부란병의 전염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차례 제공하였으나,</li> <li>• 오히려 2012년 균질 병원균(fungal pathogens)을 이유로 Washington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수입을 금지시켰음</li> <li>• 현재 미국은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인 사과, 배 등의 작물에 발병할 수 있는 세균, 병들의 무해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자료를 끊임없이 제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관세 조치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li> </ul>

사례 7.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 쇠고기</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중국이 식품 안전 문제를 이유로 호주로부터의 냉장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킴</li> <li>• 이에 호주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면허와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함에 따라 2014년 냉장 쇠고기 수입 금지가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중국의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li> <li>• 호주는 오랜 기간 동안 100개의 국가에 고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했을 만큼 냉장 쇠고기의 품질이 인증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함</li> </ul>

사례 8.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자</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식물 관련 질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 감자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2000년 공식적으로 Idaho, Oregon, 그리고 Washington의 감자 수입의 허용을 요청하였음</li> <li>• 이에 대해 중국 AQSIQ는 2013년 Pacific Northwest의 감자 수입 허가를 통보하였으나, 여전히 중국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이 필요함</li> <li>• 미국의 중국 감자 시장 개방 요청에 대해 무려 13년이나 긴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실제로 개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임</li> </ul>

사례 9.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4월 돼지독감이 퍼지기 시작하자 중국이 캐나다 알버타 주의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함</li> <li>• 이같은 조치에 대해 3개의 음식, 건강 관련 국제연구기관이 돼지독감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음을 증명하였고, 그 결과 같은 해 12월 초, 중국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를 다시 수입을 재개하였음</li> <li>• 중국으로 수출하는 서양 수출업자들은 중국의 높아지는 비관세의 이유가 서양의 선진국들이 안전문제로 중국의 몇몇 제품들의 수입을 금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함</li> <li>• 중국의 체계적이지 못한 규정의 변동에 대해, 캐나다 내 일부에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SPS 대처 능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함</li> </ul>



사례 10.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락토파민의 우려로 중국이 미국의 돼지고기 관련 모든 제품을 중단시킴</li> <li>• 2013년 중국은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락토파민이 없다는 시험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만 입국을 허가함</li> <li>• 락토파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명 자료를 미국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락토파민 금지는 오히려 강화하였으며, 끊임없는 협상 요구에도 중국은 묵묵부답임</li> <li>• 이 같은 중국의 락토파민 돼지고기 규제에 대하여, 미국 내 일각에서는 2001년 이후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이후,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과 돼지고기 수입량의 추세가 비슷함을 근거로 돼지고기 가격 통제를 위한 중국의 비관세조치라는 주장도 있음</li> </ul> <div data-bbox="555 1115 1332 1668"> </div> <p data-bbox="571 1684 1289 1715">Source: USDA 홈페이지 기사 재인용(<a href="http://www.ers.usda.gov">http://www.ers.usda.gov</a>)</p> <p data-bbox="571 1724 1289 1792">주: 물가인플레이션이 미반영 된 분기별 돼지고기, 돼지 부속물, 가공 돼지고기를 포함한 평균 가격</p>

(2) 표준 · 규격 및 검사제도

■ 조사된 사례 중 표준 · 규격 및 검사제도 유형의 비관세장벽은 ‘국제표준과의 불일치’와 ‘수입품에 대한 까다롭고 차별적인 기준 적용’에 의한 사례가 있음

- 육류에 대해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규정 완화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육류를 가공식품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중국은 육류에 생고기만으로 한정함에 따라 규정문이 애매모호하여 수출업체가 피해를 겪게 됨

사례 11.

국가명	• 미국
품목명	• 육류 가공식품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에 체결된 중국과 미국의 육류 협약에 따라 중국의 육류 수입 규정이 완화되었으나,</li> <li>• 중국이 육류 가공식품(소세지, 닭 가슴살 등)을 통관 금지함에 따라 비관세장벽 이슈가 발생함</li> <li>• 중국은 개정된 규정이 육류 생고기에 해당되고 가공식품은 미포함하므로, 수출업체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li> <li>•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례로서, 현재 미국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음</li> </ul>

- 중국은 국제 규격에 따라 미국산 우지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품목에 대해, 식품위생안전을 이유로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음

사례 12.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지(소의 지방)</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2003년 미국의 광우병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동물인 소의 기름, 우지의 수입을 전면 금지함</li> <li>• 중국의 규제는 Animal Health에 관한 국제 조직인 OIE의 지침서(광우병 발병국이더라도 무게당 최대 0.15%에 대한 우지 교역 허가)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임</li> <li>•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로 중국의 AQSIQ가 몇 개의 조항을 수정하였으나 여전히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임</li> </ul>

사례 13.

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li> </ul>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놀라유</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4월 1일 중국정부가 카놀라 기종성 진균의 감염이 우려된다며 수입 카놀라유의 2.5% 함유량(dockage)을 1%로 줄임에 따라 기존 규정을 강화함</li> <li>• 캐나다 카놀라 생산 업체들은 이미 중국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li> <li>• 캐나다 정부는 카놀라 함유량(dockage)을 줄이는 것이 카놀라 기종성 진균의 전파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국의 조치에 강하게 항의함</li> <li>• 이에 중국은 캐나다의 카놀라 농장들이 새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9월까지 정책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함</li> <li>• 중국 입장에선 만약 캐나다와의 카놀라 무역을 중단하게 될 경우 호주로부터 카놀라를 수입할 선택권이 있으며,</li> <li>•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이 걸으론 기종성 진균이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지만, 규정의 목적이 자국 내에 있는 높은 카놀라 재고량을 처리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음</li> </ul>

사례 14.

국가명	• 호주
품목명	• 밀과 발리(보리)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3월, 중국정부가 곡식 해충 및 질병과 잡초 번식을 막기 위해 호주의 밀과 발리 수입 억제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표하였음</li> <li>• GIMAF(Grains Industry Market Access Forum)관계자는 중국의 새로운 수입 규정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임을 주장함에 따라,</li> <li>• 호주 정부는 중국이 국내 비축된 곡물을 처분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음</li> </ul>

(3) 수입통관

■ 수입통관 유형으로 조사된 비관세장벽 사례는 검역 담당관의 ‘자의적 심사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별 통관 검역 기준의 차이가 존재함

- 사전에 규정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아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받게 되었으며, 지역별 항구별 검역 담당관의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어 중국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 또한 중국의 유전자 변형 곡물 시장은 수입통관 유형의 비관세장벽에 가로 막혀 있으며, 체계적이지 못한 국가표준과 제품에 대한 검역 담당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음

사례15.

국가명	• 미국
품목명	• 와인, 증류주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을 위해 2013년 2월 1일부로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화학첨가제 프탈레이트 검사를 실시함</li> <li>• 첫 째, 규정 변경에 대해 WTO와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행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통관이 거부를 당했으며,</li> <li>• 둘 째, 각 항구마다 규제 적용의 차이가 있어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상하이의 경우 반복적으로 제품이 들어오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시키는 반면, 다른 항구들은 그렇지 않음)</li> </ul>

사례 16. 유전자 변형 곡물 (미국)

국가명	• 미국
품목명	• 유전자 변형 곡물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세관과 검역 기관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농수입품의 입국 운항이 지연됨</li> <li>• 불분명한 과학적 기준의 토대로 만들어진 SPS 방안들과 불규칙적인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음</li> <li>• 중국의 규제기관의 불공평한 집행과 선택적 개입 때문에 유전자 변형 곡물 시장은 불투명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국제 농산품 시장임</li> <li>• 2015년 9월, 중국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관련된 승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동의하였고 미국은 중국이 7개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li> </ul>

(4) 운송 · 항만 이용

■ 중국은 미국의 수입품 밀(Winter wheat)에 대해서 ‘부당한 항만 이용료’를 제시함에 따라 비관세장벽 운송 · 항만 이용 유형의 비관세조치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음

사례 17.

국가명	• 미국
품목명	• 밀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미국과 1999년 농업협약을 통해 미국산 밀에 대한 추가적 조치 없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li> <li>• 하지만 흑수병과 같은 식물 병원균을 이유로 미국산 밀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li> <li>• 중국 남부 항구에서는 미국산 밀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보관비를 요구함에 따라 중국의 높은 밀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의 금전적 부담으로 비관세장벽을 겪고 있음</li> </ul>

## 1 협의의 비관세장벽 신규 사례

■ 비관세 장벽으로 조사된 신규 사례 중, 협의의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23개이며, 유형별로는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와 수입통관 유형이 많이 조사되었음

■ 신규 사례 중 비관세장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해소한 사례는 총 4건으로 팽화식품, 수정과, 액상커피, 선식 등이 있음

&lt;협의의 비관세장벽 신규 사례 요약&gt;

번호	품목	비관세장벽 유형	내용 요약	해소 여부	해소방법
1	올리브유	수입규제·수량제한	• 올리브유 수입을 위한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신청 지연	-	-
2	케익, 쿠키 등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가금류 및 그 부속생산물(계란)을 이용한 가공식품 수입 규제	-	-
3	과자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가금류 및 그 부속생산물(계란)을 이용한 가공식품 수입 규제	-	-
4	유아용 과자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어린이, 아이” 이미지가 인쇄된 제품에 대한 통관 문제 발생	-	-
5	쌀눈가공품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중국에서 접하지 못한, 기술이 가미된 신제품에 대해 국가표준 부재로 수입 금지	-	-
6	팽화식품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중국 식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원료 사용에 대해 국가표준이 부재하여 수입 금지	해소	대체재 확보
7	아이스플랜트 음료/곤드레 나물 비빔밥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중국 식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원료 사용에 대해 국가표준이 부재하여 수입 금지	-	-
8	수정과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수정과에 첨가되는 꽃감 추출물이 사용불가하여 꽃감 농축물로 대체	해소	대체재 확보

9	아로니아 함유 제품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로니아가 신자원식품으로 등록됐음에도 제품에 대한 차별 존재</li> </ul>	-	-
10	주스 음료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로니아가 신자원식품으로 등록됐음에도 제품에 대한 차별 존재</li> </ul>	-	-
11	식혜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에 함유된 계피 추출액이 수입 금지품목임에 따라 수입 금지</li> </ul>	-	-
12	영유아용 고체 음료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의 초유분말과 만니톨 사용에 따라 수입 금지</li> </ul>	-	-
13	막걸리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에 대한 강한 규제에 의해 수입 금지</li> </ul>	-	-
14	홍삼절임절편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에 대해 절임식품인지 젤리제품인지 국가표준이 애매모호</li> </ul>	-	-
15	액상 커피	수입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최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등 추상적 문구 규제에 의해 외포장지 변경</li> </ul>	해소	외포장 변경
16	선식	수입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 녹색, 웰빙” 등 추상적 문구 규제에 의해 외포장지 변경</li> </ul>	해소	외포장 변경
17	양념 고추장(소스류)	수입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되던 제품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추가 자료 요청으로 통관 지연</li> </ul>	-	-
18	김가공 팽화식품	수입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정 변경에 대해 검역 담당자가 숙지하지 못해 통관 거부</li> </ul>	-	-
19	콜라겐 음료	수입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콜라겐이 일반식품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검역 담당자는 보건식품 기준 적용</li> </ul>	-	-
20	김치	수입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정이 변경 되었을 시, 불명확한 적용 시점으로 인해 통관 거부</li> </ul>	-	-
21	인삼 음료	수입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역 담당자가 국가표준만을 인정하고 기타 하급규정은 인정하지 않아 통관 거부</li> </ul>	-	-
22	고려 홍삼 켄	수입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원료가 이용된 제품에 대해 과다 샘플 채취로 금전적 손해 발생</li> </ul>	-	-
23	김치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품목에 대한 검역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신고 가격 결정</li> </ul>	-	-

(1) 수입규제 · 수량제한

■ 수입규제 · 수량제한 유형의 세부 분류 항목 중 신규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조사된 항목은 ‘자동수입승인(Automatic I/L)<sup>13)</sup>’이 있음

사례 1.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리브유</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리브유는 중국에서 자동수입허가증을 구비해야 수입 가능</li> <li>• 올리브유 자체 수입 지연, 대행사를 통해야 하는 비용 부담 증가</li> <li>• 자동수입허가증은 협회 가입을 하면 연 8000위안 정도. 허가심사 시간을 앞당길 수 있으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보장할 수 없음</li> <li>• 신청 3년이 지났음에도 그 어떠한 진전 상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허가가 나면 통지하겠다는 말만 3년째 되풀이 하고 있음</li> <li>•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담당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시스템이 미비함</li> <li>• 자동수입허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협회 가입으로 인한 비요 낭비 사례가 있으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협회에 가입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의 제도적인 문제점</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협회의 가입 여부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비합리적 제도의 해소가 필요함</li> </ul>

13) 제2절 2-(1) 수입규제·수량제한 참고



(2)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에 해당하는 신규 농식품 비관세장벽 사례는 주로 ‘수입품에 대한 까다로운, 또는 차별적인 기준 적용’,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검역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의 유형에서 조사되었음

- 한국산 육류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그 부속생산물이 이용된 수입품에까지 까다롭고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가 발생함

사례 2.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익, 쿠키 등</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현재 국가표준(GB 7099, GB 2760)에 따라 한국산 육류, 가금류 및 그 부속생산물(삼계탕 제외)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구제역 상시 발생 국가)</li> <li>• 가금류 및 그 부속생산물(계란)의 경우 가공 후에도 불구하고 전염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할 경우 첨가 불가함</li> <li>• 중국 위생부에 질의한 결과 “그 어떠한 제품에도 계란 성분은 첨가될 수 없음”으로 회신을 받음</li> <li>• 그러나 지역 상검국에서는 가공 공정도를 확인하여 일부 제품에 소량으로 첨가되는 “난백분, 전란액” 등은 가공 과정 중 100도씨 이상의 가열 등 전염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케익, 쿠키 등)</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부에서는 공식 불가라는 입장이므로 실수입이 이루어지더라도 리스크가 있음</li> <li>•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한 결과, 한국에서도 중국산 육류 및 가금류 등에 대한 동일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수입 시 제품의 유형과 함량 등을 검토하여, 난백분 등 계란 성분이 있는 제품일지라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위생부와 지역 상검국 간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3.**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자</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2와 유사한 이유로, 한국산 계란을 이용한 과자의 중국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의 비관세 장벽(해소 가능성 확인 중)</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2 참고</li> </ul>

**사례 4.**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용 과자</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스낵, 과자류, 음료 등에 “어린이, 아이” 그림이 인쇄될 경우 수입,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함</li> <li>제품에 해당 그림이나 사진이 있을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아이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데 제품이 어린이나 유아가 섭취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입통관을 담당한 관원이 책임을 면피할 수 없음</li> <li>이에 해당 제품의 수입 통관 담당자는 그림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로 가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제품 외관과 전체 디자인 수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기업은 제품 포장을 변경함으로써 현재의 비관세조치를 피할 수 있지만,</li> <li>어린이, 유아용 쌀 과자 등 어린이 전용 스낵 등에 대한 합리적 심의 기준 부재로 인한, 심사 담당자의 의사가 개입된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한 불합리한 조치로 판단됨</li> </ul>

-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국가표준이 부재하거나 중국의 식문화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있음

**사례 5.**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눈가공품 (쌀눈분말, 쌀눈이 들어간 기타 가공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의 부재로 인해 제품의 수입을 불허함</li> <li>• 쌀눈가공품의 경우 중국에서 규정한 보건식품 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닌 단순 곡류 가공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표준 부재로 인한 수입 불가 판정</li> <li>• 해외 식품 발전 속도를 중국 표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중국 내 수입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임</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국가 표준이 개정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 식품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수준으로, 그에 따라 식품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6.**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팽화식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중국의 식문화와 부합하지 않아, 식용근거가 부재하여 통관검역에 어려움을 겪음</li> <li>• 제품 내 원료로 '썩가루'를 사용하였으나, 중국의 일부지역에서만 썩가루에 대한 식용근거가 있음</li> <li>• 즉, 식용근거가 없는 지역의 일반 항구를 이용할 경우 통관을 거부당할 위험이 높음을 인지하여 식용근거가 있는 지역항으로 수입을 유도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7 참고</li> </ul>

사례 7.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스플랜트 음료/곤드레나물비빔밥(냉동) 등</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중국인 식습관 부합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 부재</li> <li>• 한 가지 원재료 첨가 불가로 인한 가공식품 전체 성분 배합 변경으로 인한 원가 상승</li> <li>• 아이스 플랜트를 원재료로 사용한 음료의 경우 아이스플랜트가 중국인의 30년 식용 관습 중 널리 알려진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생부의 허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함</li> <li>• 곤드레나물(고려엉겅퀴)의 경우 동일한 근거로 한국산 냉동비빔밥에 원재료로 첨가 불가능</li> <li>• 대중 수출용 가공식품을 생산할 경우, 사전에 모든 원재료의 중국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특히 중국인에 생소한 채소류의 경우 주의)</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원료의 대체재를 확보하여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부담해야 함</li> <li>• 해당 원료의 국제적 사용 범위와 안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조건적인 수입 금지는 비합리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li> </ul>

사례 8.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과</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은 국가표준 GB7101-2015에 공시된 원료만 첨가 가능하나, 규정 검토를 하지 않아 중국 시장 진입이 지연됨</li> <li>• 해당 국가표준은 꺾임 추출물은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며, 꺾임 농축물은 가능한 것으로 공시 돼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장벽(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7 참고</li> </ul>

사례 9.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로니아 함유 제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로니아는 현재 신자원식품으로 신청 수리가 되었으나, 공고가 나오기 전이므로 일반식품 원재료로는 첨가가 불가능하며,</li> <li>• 한국에서는 아로니아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단 0.1%만 첨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li> <li>• 신자원식품 관리법이라는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li> <li>• 수많은 원재료 중 중국인의 식습관에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식품으로 첨가를 허가하지 않고 있고 신자원식품으로 신청 시 수리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무수히 많은 원재료를 모두 허가 신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원재료에 대해, 중국의 식습관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례로 판단됨</li> </ul>

사례 10.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스 음료</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9과 같은 이유로 인해 아로니아 농축액이 함유 돼 있는 주스음료의 중국 시장 진입이 실패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9 참고</li> </ul>

사례 11.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혜</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혜가 적용되는 규격은 계피 추출액이 원료로서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 조절로 인해 추가 비용 및 시장 진입이 지연 됨</li> <li>•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계피 추출액을 금지함으로써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김</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 가능성 파악 중)</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피 추출액의 대체재를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li> <li>• 다양한 제품에 함유되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원료에 대해 비합리적 규제를 적용함</li> </ul>

사례 12.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용 고체 음료</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은 국가표준 GB2760에 해당되며, 규정은 영유아용 제품에 ‘초유분말’ 과 ‘만니톨’의 사용을 금하고 있음</li> <li>• 과거 가짜 조제분유 사건으로 인해 중국 정부 및 국민은 영유아 제품에 상당히 민감하여 식품 원료에 대한 제재가 까다로움</li> <li>• 중국은 영유아 식품에 ‘초유분말 및 만니톨’을 사용한 전례가 없으며 이를 규제하고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원료의 대체재를 확보하여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부담해야 함</li> <li>• 해당 원료의 국제적 사용 범위와 안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조건적인 수입 금지는 비합리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 됨</li> </ul>

**사례 13.**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걸리</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은 국가표준 GB 2760에 공시된 사용가능원료 목록에 따라,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사용이 불가함</li> <li>• 아스파탐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120여 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 인공감미료임에도 불구하고,</li> <li>• 식품 위생에 매우 민감한 중국 정부 및 국민은 아스파탐 이 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 가능성 확인 중)</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9 참고</li> </ul>

- 아직까지 피해 사례로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수입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표준이 애매모호하여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 제품의 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함

**사례 14.**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삼절임절편</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년근 이하 제품인 홍삼절임절편에 대한 규격이 모호하여, 제품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에 혼선이 있어 수출 지연 중임</li> <li>• 홍삼절임절편의 경우, 제품의 특징 상 '젤리제품' 이나 '절임식품' 중 하나에 적용될 수 있으며,</li> <li>• 적용되는 규격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 수입 시 통관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규격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 가능성 확인 중)</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매모호한 규정은 검역 담당자의 제품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비합리적 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li> </ul>

(3) 수입통관

■ 수입통관 유형의 경우, 비관세장벽의 세부 항목으로는 ‘과다한 서류요건’, ‘자의적 심사 기준’, ‘샘플 및 전시 용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신규 피해 사례로 조사됨

- 제품의 외포장지에 기입된 추상적 홍보성 문구(세계 최초, 녹색, 건강한 등)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거가 가능한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함
- 기존에 원활하게 수출이 진행되던 제품에 대해 국가 표준 외의 검사를 진행하여 소명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통관이 거부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함

사례 15.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상 커피</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상 커피의 라벨은 국가 추천 표준규격(GB/T 30767)에 따라 과대 광고문구 표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외포장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함</li> <li>• 중국 자국민이 외포장 문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자, 문구 작성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수입 통관이 지연됨</li> <li>• “세계최초” 및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등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요청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상적인 문구와 같이 매우 세세한 내용을 모두 규정에 언급할 수는 없으나,</li> <li>• 사례와 같이 추상적인 문구에 대해 모든 설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로 판단됨</li> </ul>



사례 16.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식</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15과 유사한 이유로 선식 제품의 외포장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추가 비용이 발생함</li> <li>• “자연, 웰빙, 녹색, 건강, 다이어트” 등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요청함</li> <li>• 제품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을 제한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15 참고</li> </ul>

사례 17.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념 고추장(소스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 외 별도 검사 진행 후 소명 자료 제출로 인해 수입통관이 지연됨</li> <li>• 적용된 유사규격 표준에는 이산화황 검사 항목 없음</li> <li>• 해당 검사 보고서 발급을 위해 통관 기간이 2주 지연됐으며, 각종 검사비용, 발급비용, 화물대기 창고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함</li> <li>• 한국에서는 “마늘”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음(품목제조 보고서에 첨가제로 이산화황이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검출이 될 경우 소명을 통해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식약처의 근거 자료 제출)</li> <li>• 중국에서 GB 규정에 없는 항목을 검역항목으로 진행하여, 검출된 부분에 대한 소명 요청 후, 천연 유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마늘의 실험검사보고서를 제공하라고 함(마늘은 중국산이었음)</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검역 담당자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li> <li>• 지나친 요구로 인해 식품의 통관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li> </ul>

- 국가표준이 개정되어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제품 수입이 금지됨

사례 18.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가공 팽화식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분류에 부합하는 국가표준(GB17401-2014, 팽화식품)으로 실험실 검역을 진행하지 않고 개정 전(GB17401-2003)의 국가표준을 적용함</li> <li>• 부당한 검사 시행 및 결과로 인해 제품을 폐기 처분함</li> <li>• 김이 40% 정도이고, 나머지는 찹쌀을 입힌 김 가공식품(최종 분류는 팽화식품으로 함)의 개정 검역표준 중, 중금속함량 검사에서 “총비소”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개정 전 기준을 적용, 총 비소가 초과 검출되었으니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함</li> <li>• 해당 근거를 들어 조치에 불복하고, 상급 기관(중국 위생부)에 보고하였고 부당함을 인정받았으나, 담당 공무원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하여 샘플물량(1파레트 정도)으로 폐기 처분에 동의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검역 담당자가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19.

<p>품목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라겐 음료</li> </ul>
<p>비관세장벽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에서 콜라겐, 즉 GB2760-2014(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분해효소를 이용한 동식물성단백질의 경우 일반식품으로 관리한다는 위생부의 공고(2013年第7号公告)가 있음</li> <li>• 그러나 실 수입 샘플을 제공하여 문의하자, 해당 수입 검역 담당자는 개정된 규정과 달리, 콜라겐을 첨가한 음료의 경우 “콜라겐”은 “보건식품”이기 때문에 첨가가 불가능하며, 해당 음료는 기능성 보건식품으로 허가를 받으라고 함</li> <li>• 이에 한국에서 개발된 뷰티음료 등 수입 불가 판정을 받음</li> <li>• 해당 공고에 “胶原蛋白(콜라겐)”라는 글자가 없으며, 약국에서 보통 콜라겐을 첨가한 영양제 등 보건식품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식품에 첨가할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효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li> <li>• 콜라겐이 곧, 효소를 이용한 동물성 단백질 추출물이기 때문에 콜라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만, 해당 항구 소재 검역국의 담당자가 중국 위생부 공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됨</li> </ul>
<p>비관세장벽 유형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p>판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위생부와 지역 상검국 간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20.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치</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치는 “가공식품”으로 식물검역증은 기존에 제출 요청 서류가 아니었으나, 김치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병해충이 없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식물검역증이 필수 요청 서류가 되었으나,</li> <li>위 사항이 공고되기 전 출항한 김치 제품에 대해서 변경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규정의 필수 서류를 요청하여, 위생허가증 없이 제품물량이 소진됨</li> <li>16년 7월 상검 내부 지침 하달 전에 도착한 화물에 대해서 식물검역증을 요청하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한 결과 “이미 한국을 떠난 화물에 대해서는 발급 불가” 라는 회신을 받음</li> <li>이에 수출기업이 해당 제품은 내부 지침 하달 전에 도착한 화물이기 때문에 변경된 규정에 적용받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으나, 통역 담당관은 수출기업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위생허가증 발급 없이 화물만 샘플 물량으로 하여 통관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CIQ에서 내부지침 적용 시 선적 시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된 피해 사례로 판단됨</li> </ul>

사례 21.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삼 음료</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국가표준 중 강제안전표준만을 적용함</li> <li>일부 항구의 검역국의 경우에는 담당자에 따라 반드시 GB 표준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고, GB 표준 이하 하급 표준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li> <li>인삼음료의 경우 GB 표준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수입 허가 거부함으로써, 수입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검역표준 적용을 달리하는 관습 때문에, 기타 하급 표준 적용이 가능한 검역항으로 변경하여 통관을 완료했으나, 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li> <li>중국 위생부에서는 “국가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중국 위생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li> <li>관련 규정 중 GB표준이 아니고 GB/T, SB, QB 등 하급 표준이 존재할 경우에는 국가표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li> <li>즉, 하급 표준 중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는 표준이 있다면 꼭 GB표준이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항구별 국가 표준 적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발생된 비합리적 조치임</li> </ul>

-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과도하게 샘플을 채취함에 따라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함

사례 22.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 홍삼 캔</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삼 제품 등급은 천삼, 지삼, 양삼으로 구분되고, 각 등급 당 제품 규격은 1캔에 10지, 15지, 20지, 30지이며 캔 중량은 600g, 300g, 150g, 75g, 37.5g으로 구분됨</li> <li>• 홍삼은 보건식품이기에 철저한 검사가 요구되는 식품이지만, 등급별로 동일한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별(뿌리 수당, 중량당)로 샘플을 각각 채취함에 따라 통관검역의 비용 부담에 애로사항이 있음</li> <li>• 다양한 제품 종류가 있으나 등급별 사용 원료는 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검역국은 각 종류마다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함</li> <li>• 홍삼의 증치세는 23~32%이며 유통마진을 감안하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신고가격의 약 2~2.5배가 됨에 따라 약 8%의 비용이 발생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보건식품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검역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된 비관세 조치로 판단됨</li> </ul>

(4)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유형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비관세장벽 신규 사례 중 제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최저가격제'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조사됨

- 관세 담당자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한국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하여 신고 가격을 높이도록 요구함에 따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킴

사례 23.

<p>품목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배추김치, 갓김치)</li> </ul>
<p>비관세장벽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샘플 물량으로 시험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관에 기록된 동일 원산지 동일 품목의 기존 수입 신고 가격을 근거로 신고가격을 높이라고 유도함</li> <li>• 개별 수입업체나 수출업체의 상황과 그 브랜드, 수입 후 사용 용도, 시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판단되며,</li> <li>• 수입통관 지연은 물론, 그로 인한 냉장컨테이너 오버차지, 냉각비용 등 비용이 과다 발생함</li> <li>• 제품의 1kg당 신고 가격을 4볼로 올려서 신고하라는 해관의 통지를 받음</li> <li>• 4볼로 신고할 경우 중국산 김치와 가격 경쟁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중치세 납부 및 부대 비용을 합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해관에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해관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관세평가 심의에 3일 정도가 걸림</li> <li>• 김치는 신선도를 위해 빠른 통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로 인해 통관이 지연됨</li> </ul>
<p>비관세장벽 유형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p>판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관에서 동일 국가의 동일 제품군의 소수 수입 기록만을 근거로 수입신고가격을 높이는 것은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됨</li> </ul>

## 2 광의의 비관세장벽 신규 사례

■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된 신규 사례 중, 광의의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14개로 조사되었으며, 유형별로는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가 총 12개(나머지 2개는 수입통관 유형)로 가장 많았음

■ 조사된 사례 중 비관세장벽이 해소된 사례는 4건으로, 규정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제품을 수정함

<광의의 비관세장벽 신규 사례 요약>

번호	품목	비관세장벽 유형	내용 요약	해소 여부	해소 방법
24	마죽, 선식제품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지역별, 항구별로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	-	-
25	고체 음료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제품의 외포장지에 기입된 '식이섬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외포장지 변경	해소	외포장지 변경
26	유기농 품목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유기농의 국제 표준을 인정하지 않아, 중국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외포장지에 '유기농' 인증을 기입한 제품에 대해 외포장지 변경 요구	-	-
27	식혜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유기농의 국제 표준을 인정하지 않아, 중국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외포장지에 '유기농' 인증을 기입한 제품에 대해 외포장지 변경 요구	-	-
28	치즈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HACCP에 대한 국제표준을 이렇듯 하지 않음에 따라, 외포장지에 기입된 HACCP마크 제거 요구	-	-
29	인삼차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인삼을 5년근 이하와 6년근 이상으로 제품을 구분함에 따라, 제품의 외포장에 5년근 이하를 명시하도록 요구	-	-
30	인삼 절편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인삼의 일일 섭취량이 3그램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어, 제품 포장의 크기를 3그램에 맞춰서 만들도록 요구하여 수입을 금지	-	-
31	콘플레이크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위생 검역 기준	-	-
32	치즈 첨가 제품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위생 검역 기준	-	-
33	냉면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위생 검역 기준	-	-
34	조미김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위생 검역 기준	-	-
35	라이스칩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위생 검역 기준	해소	원료 함유량 변경
36	아기간식	수입통관	• 일반식품에 표시가 금지된 사용연령 제한에 대한 규정 위반	해소	외포장 변경
37	냉동생지	수입통관	• 제품 외포장 상 성분표기 규정 미준수로 인해 외포장지 변경 요청	해소	외포장 변경

(1)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유형에 속하는 광의의 비관세장벽 신규 사례는 주로 ‘국가 표준 부재’, ‘유사 규격 불인정’으로 인해 발생됨

- 수입품에 대한 국가표준이 부재하여 임의로 유사표준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그 규정이 상이하어 수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사례 24.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죽, 선식제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지역에서는 마죽, 선식제품에 대해 “음료”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수입을 하고 있으나 지역별, 제품별 이견으로 인해 수출에 애로가 있음</li> <li>• 선식제품의 경우 원재료에 특이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단순 곡물 가루 배합) “곡물가루제품”의 단독 국가표준이 현재 편제 중인 단계로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아 수입이 어려움</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지리적 특징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식이섬유, 유기농, HACCP 등 인증제에 대한 국제 규격을 인정하지 않아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추가 발생함

사례 25.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체음료</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의 외포장에 ‘식이섬유’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였으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대광고라는 지적으로 GB/T 30767에 의해 통관에 제약을 받음</li> <li>• ‘식이섬유 함유’의 표기는 100g당 3g이 들어가 있을 경우, 또 ‘식이섬유가 많음’의 표현은 100g당 6g 이상인 경우에만 표기 가능</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이섬유 표현의 명확한 기준은 식이섬유 제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광고를 제한함</li> <li>• 식이섬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한 합당한 제한으로 판단됨</li> </ul>



사례 26.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 품목</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 인증 없이 제품 포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경우, 수입검역 불합격처리, Ship-back, 시장에서 발견 시 시정 조치 및 3만 위안 내 벌금 부과하고, 해당 마크가 있는 식품의 경우 외포장에서 해당 마크를 삭제하거나, 중국에서 별도의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함</li> <li>중국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인증을 획득하기 쉽지 않음</li> <li>유기농제품관리법(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总局令第155号))에 의거하여, 중국과 유기농 인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닐 경우, 상대국의 유기농 인증마크, 외국어로 기재된 “유기농”이라는 단어 등 기재가 불가하며,</li> <li>이는 자국 제품에도 동등하게 관련 인증을 획득해야 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위생사고가 빈번했던 중국 정부 및 국민은 식품 안전에 상당히 민감한 사실을 감안해 봤을 때, 유기농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식품 위생안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27.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혜</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26과 같은 이유로 식혜의 외포장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하고 중국 시장 진입이 지연 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26 참고</li> </ul>

사례 28.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즈</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제품의 외포장에 'HACCP' 관련 문구를 삽입하였으나, 수출업체의 명칭과 HACCP 인증서 상의 명칭 불일치로 인해 국가표준 GB 10789에 따라 HACCP 문구를 삭제함</li> <li>• 해당 제품의 수출업체 명칭과 HACCP 인증서 상의 업체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li> <li>• 해당 업체의 경우, 입증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보완이 불가하여 외포장상 HACCP 문구를 삭제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업체 명과 인증업체 명의 차이를 명확하게 검사한 것은 검역국의 정당한 조치로 판단됨</li> </ul>

- 수입품에 대해 까다로운, 또는 차별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간적·금전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특히 보건식품의 경우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례 29.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차</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식품 및 일반식품의 구분을 위한 5년근 이하 인공재배 삼을 명기하도록 하여 포장인쇄변경에 따른 중국 시장진입 3개월 지연</li> <li>• 제품의 기존 라벨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인삼”으로만 표현하였으나, 중국 법규에 의거 “5년근 이하 인공재배 인삼” 명기하도록 요구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근 미만은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을 하고 있으며, 5년근 이상 제품은 보건식품으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제품에 활용된 원재료에 대해 명확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음</li> </ul>

사례 30.

<p>품목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삼 절편</li> </ul>
<p>비관세장벽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삼 절편의 경우 1봉에 3그램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은 정확히 3그램 미만으로 그램수를 맞춰서 포장을 해야 하는 일부 상검국 규정이 있어, 생산원가 상승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li> <li>인삼은 신자원식품 관리법에 따라 5년근 이하만 사용 가능하며, 어린이와 임산부는 섭취를 금하고 있으며 성인의 1일 섭취량은 3그램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li> <li>섭취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의 원인이 됨</li> </ul>
<p>비관세장벽 유형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p>판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벨에 1일 섭취 제한량에 대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섭취량을 조절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li> <li>중국 정부의 자국민을 위한 측면에서, 규정에 따라 3그램 미만으로 제품을 제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li> </ul>

사례 31.

<p>품목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플레이크</li> </ul>																																																														
<p>비관세장벽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제품은 고체 혼합음료 위생표준(GB 7101)에 적용됨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규격 및 요구조건이 까다로워 중국 시장 진입을 포기함</li> <li>• 시험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579 580 1334 1032"> <thead> <tr> <th rowspan="2">항목</th> <th colspan="4">채취방안 및 제한량</th> </tr> <tr> <th>n</th> <th>c</th> <th>m</th> <th>M</th> </tr> </thead> <tbody> <tr> <td>세균수 (CFU/g or CFU/mL)</td> <td>5</td> <td>2</td> <td>10</td> <td>5*10<sup>4</sup></td> </tr> <tr> <td>대장균수 (CFU/g or CFU/mL)</td> <td>5</td> <td>2</td> <td>10</td> <td>10<sup>2</sup></td> </tr> <tr> <td>곰팡이 (CFU/g or CFU/mL)≤</td> <td colspan="4">50</td> </tr> <tr> <td>살모넬라균</td> <td>5</td> <td>0</td> <td>0</td> <td>-</td> </tr> <tr> <td>황금색포도상구균</td> <td>5</td> <td>1</td> <td>100 CFU/g (mL)</td> <td>1000 CFU/g (mL)</td> </tr> </tbody> </table> <p>n: 한무리 샘플링 수량, c: 최대 m-M수치 내에 있는 샘플 수량 m: 접수할 수 있는 병원균 제한량 M: 병원균의 최고 안전 제한량</p> </li> <li>• 시험 결과             <table border="1" data-bbox="579 1337 1334 1576"> <thead> <tr> <th>시험항목</th> <th>결과</th> <th>단위</th> <th>시험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대장균군</td> <td>&lt;0.3</td> <td>MPN/g</td> <td>GB 4789.3-2010</td> </tr> <tr> <td>황금색포도상구균</td> <td>불검출</td> <td>/25g</td> <td>GB4789.10-2010</td> </tr> <tr> <td>세균수</td> <td>880000</td> <td>CFU/g</td> <td>GB4789.2-2010</td> </tr> <tr> <td>곰팡이수</td> <td>70</td> <td>CFU/g</td> <td>GB 4789.15-2010</td> </tr> <tr> <td>살모넬라균</td> <td>불검출</td> <td>/25g</td> <td>GB 4789.4-2010</td> </tr> <tr> <td>납(Pb)</td> <td>&lt;0.05</td> <td>mg/kg</td> <td>GB 5009.12-2010</td> </tr> </tbody> </table> </li> </ul>	항목	채취방안 및 제한량				n	c	m	M	세균수 (CFU/g or CFU/mL)	5	2	10	5*10 <sup>4</sup>	대장균수 (CFU/g or CFU/mL)	5	2	10	10 <sup>2</sup>	곰팡이 (CFU/g or CFU/mL)≤	50				살모넬라균	5	0	0	-	황금색포도상구균	5	1	100 CFU/g (mL)	1000 CFU/g (mL)	시험항목	결과	단위	시험방법	대장균군	<0.3	MPN/g	GB 4789.3-2010	황금색포도상구균	불검출	/25g	GB4789.10-2010	세균수	880000	CFU/g	GB4789.2-2010	곰팡이수	70	CFU/g	GB 4789.15-2010	살모넬라균	불검출	/25g	GB 4789.4-2010	납(Pb)	<0.05	mg/kg	GB 5009.12-2010
항목	채취방안 및 제한량																																																														
	n	c	m	M																																																											
세균수 (CFU/g or CFU/mL)	5	2	10	5*10 <sup>4</sup>																																																											
대장균수 (CFU/g or CFU/mL)	5	2	10	10 <sup>2</sup>																																																											
곰팡이 (CFU/g or CFU/mL)≤	50																																																														
살모넬라균	5	0	0	-																																																											
황금색포도상구균	5	1	100 CFU/g (mL)	1000 CFU/g (mL)																																																											
시험항목	결과	단위	시험방법																																																												
대장균군	<0.3	MPN/g	GB 4789.3-2010																																																												
황금색포도상구균	불검출	/25g	GB4789.10-2010																																																												
세균수	880000	CFU/g	GB4789.2-2010																																																												
곰팡이수	70	CFU/g	GB 4789.15-2010																																																												
살모넬라균	불검출	/25g	GB 4789.4-2010																																																												
납(Pb)	<0.05	mg/kg	GB 5009.12-2010																																																												
<p>비관세장벽 유형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li> </ul>																																																														
<p>판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제품들이 있으므로 검역 기준이 해당 제품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별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은 아님</li> </ul>																																																														

사례 32.

<p>품목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즈 첨가 제품</li> </ul>																																							
<p>비관세장벽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제품 규격의 변경(GB7099)으로 인해 미생물 지표 검역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현재 납품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실험 중에 있음</li> <li>• 2016년 9월 22일까지 적용되는 기존 열가공 및 냉가공에 따른 미생물 지표 구분</li> </ul> <table border="1" data-bbox="577 667 1334 880"> <thead> <tr> <th>항목</th> <th>열가공(≤)</th> <th>냉가공(≤)</th> </tr> </thead> <tbody> <tr> <td>균락총수(CFU/g)</td> <td>1000</td> <td>50000</td> </tr> <tr> <td>대장균수(MPN/100g)</td> <td>30</td> <td>150</td> </tr> <tr> <td>곰팡이류(CFU/g)</td> <td>100</td> <td>150</td> </tr> <tr> <td>병원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td> <td colspan="2">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된 새로운 규정</li> </ul> <table border="1" data-bbox="577 1021 1334 1361"> <thead> <tr> <th rowspan="2">항목</th> <th colspan="4">실험방법 및 제한량</th> </tr> <tr> <th>n</th> <th>c</th> <th>m</th> <th>M</th> </tr> </thead> <tbody> <tr> <td>세균수 (CFU/g or CFU/mL)</td> <td>5</td> <td>2</td> <td>10</td> <td>10<sup>5</sup></td> </tr> <tr> <td>대장균수 (CFU/g or CFU/mL)</td> <td>5</td> <td>2</td> <td>10</td> <td>10<sup>2</sup></td> </tr> <tr> <td>곰팡이(CFU/g)</td> <td colspan="3">≤150 (곰팡이균 속성 치즈 제품 제외)</td> <td>-</td> </tr> </tbody> </table> <p>n: 한무리 샘플링 수량, c: 최대 m-M수치 내에 있는 샘플 수량 m: 접수할 수 있는 병원균 제한량 M: 병원균의 최고 안전 제한량</p>	항목	열가공(≤)	냉가공(≤)	균락총수(CFU/g)	1000	50000	대장균수(MPN/100g)	30	150	곰팡이류(CFU/g)	100	150	병원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0		항목	실험방법 및 제한량				n	c	m	M	세균수 (CFU/g or CFU/mL)	5	2	10	10 <sup>5</sup>	대장균수 (CFU/g or CFU/mL)	5	2	10	10 <sup>2</sup>	곰팡이(CFU/g)	≤150 (곰팡이균 속성 치즈 제품 제외)			-
항목	열가공(≤)	냉가공(≤)																																						
균락총수(CFU/g)	1000	50000																																						
대장균수(MPN/100g)	30	150																																						
곰팡이류(CFU/g)	100	150																																						
병원균(살모넬라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0																																							
항목	실험방법 및 제한량																																							
	n	c	m	M																																				
세균수 (CFU/g or CFU/mL)	5	2	10	10 <sup>5</sup>																																				
대장균수 (CFU/g or CFU/mL)	5	2	10	10 <sup>2</sup>																																				
곰팡이(CFU/g)	≤150 (곰팡이균 속성 치즈 제품 제외)			-																																				
<p>비관세장벽 유형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 가능성 확인 중)</li> </ul>																																							
<p>판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의 개정 목적은 제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품의 위생과 안전을 목적으로 한 합리적인 조치이므로,</li> <li>• 수출기업은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정되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li> </ul>																																							

**사례 33.**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냉면</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편면(方便面)류 위생표준(GB 17400-2015)에 따른 미생물에 대한 까다로운 검역 기준</li> <li>간편면류 미생물 위생표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면(≤)</th> <th>면+소스(≤)</th> </tr> </thead> <tbody> <tr> <td>균락총수(CFU/g)</td> <td>1000</td> <td>50000</td> </tr> <tr> <td>대장균수(MPN/100g)</td> <td>30</td> <td>150</td> </tr> <tr> <td>병원균(살모넬라균, Vibrio Parahemolyticus,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td> <td colspan="2">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수출용 사전검사 시, 대장균 수 1000(MPN/100g)으로 기준치를 초과함</li> </ul>	항목	면(≤)	면+소스(≤)	균락총수(CFU/g)	1000	50000	대장균수(MPN/100g)	30	150	병원균(살모넬라균, Vibrio Parahemolyticus,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0	
항목	면(≤)	면+소스(≤)											
균락총수(CFU/g)	1000	50000											
대장균수(MPN/100g)	30	150											
병원균(살모넬라균, Vibrio Parahemolyticus,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0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 가능성 확인 중)</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31 참고</li> </ul>												

**사례 34.**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미김</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미김은 위생표준(GB/T 23596-2009)에 따르며, 미생물에 대한 까다로운 검역 기준이 적용됨</li> <li>조미김에 대한 미생물 위생표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지표</th> </tr> </thead> <tbody> <tr> <td>대장균수(MPN/100g)</td> <td>30</td> </tr> <tr> <td>곰팡이(CFU/g)</td> <td>300</td> </tr> <tr> <td>병원균(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시겔라균)</td> <td>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수출용 사전검사 시, 곰팡이 수 5000(MPN/100g)으로 기준치를 초과함</li> </ul>	항목	지표	대장균수(MPN/100g)	30	곰팡이(CFU/g)	300	병원균(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시겔라균)	0
항목	지표								
대장균수(MPN/100g)	30								
곰팡이(CFU/g)	300								
병원균(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균, 쉬겔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시겔라균)	0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의의 비관세 장벽 (해소 가능성 확인 중)</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31 참고</li> </ul>								

**사례 35.**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스칩</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표준(GB 17401-2014)에 해당되는 라이스칩은, 제조 원료에 대한 제한량 규정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차질이 생김</li> </ul>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라이스칩 제품에 사용되는 Steviol Glycosides의 함량이 0.15% 미만으로 기준치 0.017 미만을 초과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례 31</b> 참고</li> </ul>

(2) 수입통관

■ 수입통관 유형의 경우, 비관세장벽의 세부 항목으로 ‘부당한 통관 시비’가 신규 사례로 조사되었음

**사례 36.**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기간식</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식품의 제품 포장에 사용연령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음</li> <li>• 일반식품 아기간식에 수출 포장에 “7개월”을 명기하여 규정에 위반됨</li> <li>• 아기간식이기에 포장에 “7개월”을 명시하였지만, 일반식품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인해 표기된 연령제한 내용을 삭제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식품의 연령제한 표기 제한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치로 판단됨</li> </ul>

**사례 37.**

품목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동생지</li> </ul>
비관세장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 GB 7101에 따르면, 성분표기의 규칙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가능 원료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성분 표시 시 조성분의 경우 개별성분으로 분리 표시하도록 돼 있음</li> <li>• 이에 생지의 제품성분표시 중 “계양제 및 크립류”에 관한 표기를 분리하여 라벨 성분 표기를 변경함</li> </ul>
비관세장벽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의의 비관세 장벽(해소)</li> </ul>
판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포장에 관한 국가표준 규정에 따른 합리적 조치로 판단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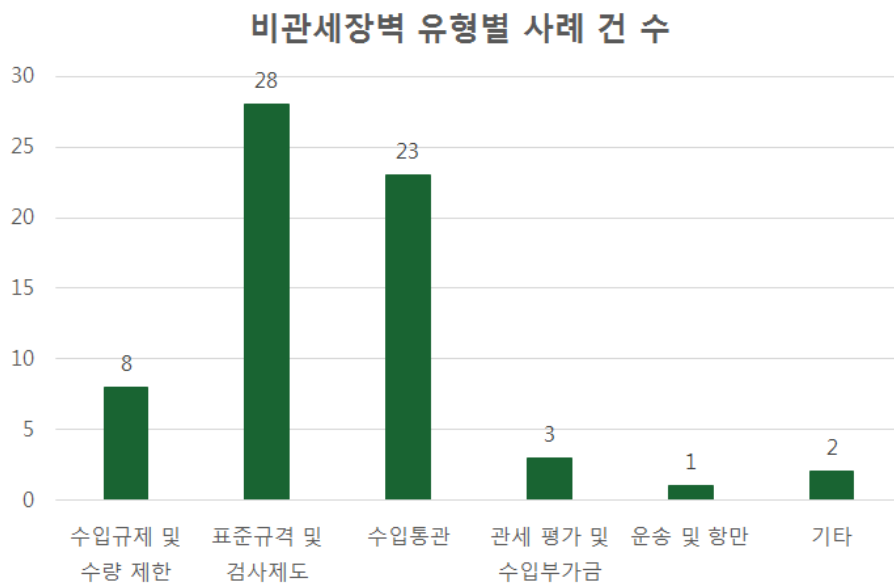
## 1 對중국 농식품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분석

## (1)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현황

■ 조사된 비관세장벽 65건(기존 사례 28건, 신규 사례 37건)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해 본 결과,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와 수입통관 각각 28건, 23건으로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이 8건, 관세 평가 및 수입부가금 3건, 운송 및 항만 1건, 기타가 2건으로 나타남

■ 이에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와 수입통관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비관세장벽 사례가 발생된 공통 특징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2) 수입규제 및 수량 제한 유형

■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유형은 총 8건으로 기존 사례의 경우 협의의 비관세장벽 2건, 광의의 비관세장벽 5건 등 7건, 신규 사례의 경우 협의의 비관세장벽이 1건으로 조사됨

■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유형의 세부유형으로는 ‘수입금지’, ‘자동수입승인’,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감시제’,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등이 있음

- ‘수입금지’ 유형에는 크게 두 종류의 금지 품목이 있는데, 중국에서 자급자족 하는 신선과일 품목과 자국민에게 유해할 수 있는 동충하초가 있음

- 중국 정부는 자급자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수입을 금지한 사례이며, 동충하초는 한국산 제품에서 비소가 검출됨으로써 수입이 금지됨

- ‘자동수입승인 유형’에는 식품 조리의 필수 품목인 올리브유와 과거 멜라닌 분유 파동 이후 중국 정부의 민감 품목인 유제품 등이 있음

- 조리에 있어서 올리브유는 필수품목으로서 중국의 수요량이 매우 높기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품목이며, 분유를 포함한 유제품은 식품위생안전 이슈로 인해 중국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품목임

-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 감시제’ 유형은 ‘수입쿼터’ 유형, ‘수출자율규제’ 유형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관측되며, 광우병·구제역 등으로 인해 규제 받고 있는 열처리 축산 가공품의 삼계탕과 중국의 주식인 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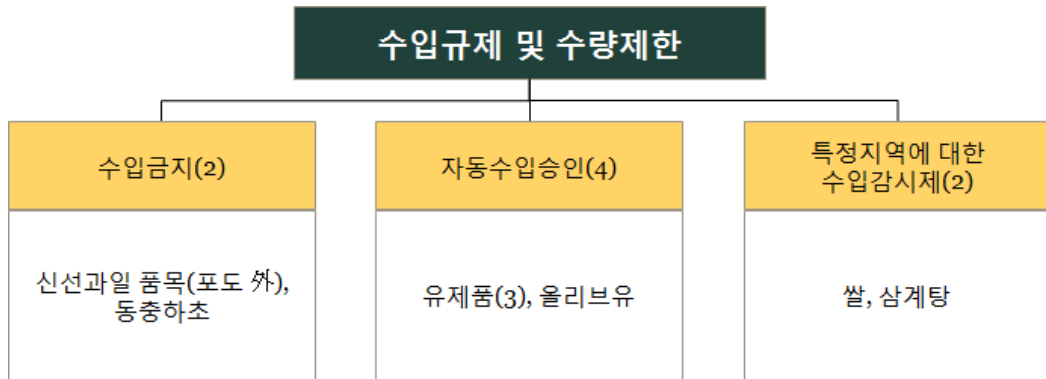
- 삼계탕과 쌀은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가 수입량과 특정 지역을 제한하고 있어 비관세장벽 사례이기도 함

- 주식인 쌀은 자국 산업보호 목적으로, 삼계탕의 경우 광우병과 구제역 등으로 부터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중국 정부차원에서 조치한 비관세장벽임

■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유형의 경우, 주로 합리적 사유로 인한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대부분이며, 민간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이슈의 유형임

■ 포도는 신선과일 품목, 삼계탕은 축산품 중 유일하게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며, 두 품목 모두 민간과 정부의 노력으로 비관세장벽을 (제한적이지만) 해소한 성공 사례임

■ 따라서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재 수출 중인 포도와 삼계탕을 중심으로 신선과일, 축산품목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해야 함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유형의 비관세장벽 사례>

구분	협정의 비관세장벽		광의의 비관세장벽		계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기존 사례	2	생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5	신선과일, 동충하초, 유제품, 쌀, 열처리 축산 가공품(삼계탕),	7
신규 사례	1	올리브유	0	-	1
계	1	-	7	-	8
해소 사례	0	-	3	신선과일(포도), 열처리 축산(삼계탕), 쌀	3

### (3)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유형

■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유형은 조사된 사례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총 28건(기존 사례 3건, 신규 사례 25건)이 조사되었음

- 기존 사례(3건)의 경우 협정의 비관세장벽이 2건,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1건이 있었으며, 신규 사례(26건)의 경우 협정의 비관세장벽이 13건,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12건이 조사됨

■ 세부적으로 ‘중국의 국가표준 부재 또는 국제표준의 불일치’, ‘유사 규격 불인정’, ‘수입품에 대한 까다로운, 또는 차별적 기준 적용’ 등이 있으며, 광의의 비관세장벽과 협의의 비관세장벽 구분 없이 발생 빈도가 높음

- ‘중국의 국가표준 부재 또는 국제표준의 불일치’로 인한 비관세장벽은 대부분 검역 담당관이 원료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국가 표준이 부재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임
  - 국가표준의 부재와 한국과 중국의 식문화 차이는 쌀눈가공품, 팽화식품, 수정과, 아이스플랜트/콘드레비빔밥, 수정과, 식혜, 기타 특정 음료 등 식품 전반에 걸쳐서 피해 사례가 나타남
  - 제품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어떤 표준·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 발생되는 비관세장벽으로서, 수입통관 시 검역 담당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됨
- ‘유사 규격 불인정’으로 인한 비관세장벽은 식품 위생에 매우 민감한 중국 정부가 제품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인증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식이섬유 첨가, HACCP, 유기농 인증’ 등과 같이 제품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인증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인증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함
- ‘수입품에 대한 까다로운, 또는 차별적 기준 적용’에 의한 비관세장벽은 보건식품에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 검사 기준에 따라 피해 품목이 발생하고 있음
  - 인삼차, 인삼절편 등 보건식품에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콘플레이크·치즈첨가제품·냉면 등에 대해 까다로운 검역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통관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황임

■ 수입 식품 견제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중국의 식품 산업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적용된 합리적 규제(광의의 비관세장벽)와 타당하지 못한 근거로 인한 비합리적 규제(협의의 비관세장벽) 모두 나타남

- 비합리적 규제의 경우, 한국 공인검사기관의 불인정, 중국의 기술 부족으로 인한 식품의 잘못된 분석,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원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 제품에 대한 검역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등으로 발생된 피해 사례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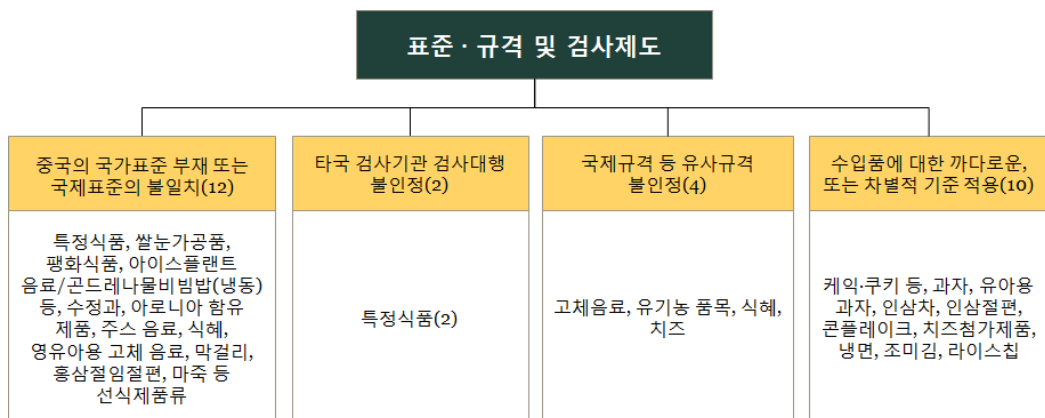
■ 따라서 수출 기업이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관지역 항구의 검사 방법, 항목, 그리

고 기준 등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제품의 국가 표준을 조사하여 제품 원료 중 첨가할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 대체 품목을 이용함으로써 비관세조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비관세장벽 사례 검토의 식품 품목 중 수정과, 라이스칩의 경우,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 하나가 국가 표준에 의해 규제받게 됨에 따라 대체재를 활용하여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함
- 검토 사례 중, 수출기업이 이용하고자 했던 지역향에서 팽화식품 원료인 썬가루의 식용근거가 미흡하여 통관이 거부되자, 타 수출 가능 지역향을 탐색하여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함
- 검토 품목 중 고체음료의 외포장지에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식이섬유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이를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중국 시장 진입에 성공함

■ 타당하지 못한 근거로 인해 겪게 되는 비관세조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역 당국 및 검역 담당자와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야 함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유형의 비관세장벽 사례>

구분	협회의 비관세장벽		광의의 비관세장벽		계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기존 사례	1	특정식품	2	특정식품	3
신규 사례	13	케익·쿠키, 과자, 유아용 과자, 쌀눈가공품, 아이스플랜트 음료, 곤드레나물비빔밥 팽화식품, 수정과, 양념 고추장, 홍삼절임절편, 아로니아 함유제품, 주스 음료, 식혜, 영유아용 고체음료, 막걸리	12	마죽 등 선식제품류, 유기농 품목, 식혜, 고체음료, 치즈, 인삼차, 인삼 절편, 콘플레이크, 치즈 첨가제품, 냉면, 조미김, 라이스칩	25
계	14	-	14	-	28
해소 사례	2	팽화식품, 수정과	2	고체음료, 라이스칩	4

(4) 수입통관 유형

■ 수입통관 유형은 조사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으며, 총 23건 중 기존 사례와 신규 사례가 각각 13건, 10건으로 조사됨

- 기존 사례의 13건 중 협회의 비관세장벽이 5건,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8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규 사례의 10건은 협회의 비관세장벽이 8건,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2건으로 조사됨

■ 세부적으로는 ‘과다한 서류 요건’, ‘자의적 심사 기준’, ‘샘플 및 전시 용품에 대한 관세 부과’, ‘부당한 통관 시비’ 등 광의의 비관세장벽과 협회의 비관세장벽 모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과다한 서류의 요구’는 음료, 주류, 어묵, 액상커피 등의 품목에서 발생했으나,

어떠한 품목이든 통관검역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받을 수 있음

- 통관 검역 과정에서 식품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 포장지의 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 서류 및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나, 통관 지연 등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음
- ‘자의적 심사 기준’은 분명하지 않은 표준·규정으로 인해 검역 담당자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주관적으로 제품이 적용되는 품목 군을 결정함으로써, 수출 기업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항목을 검사하여 발생하는 피해 사례임
  - 해당 유형으로 조사된 비관세장벽 사례의 품목으로 콜라겐 음료, 팽화식품, 인삼음료, 마른 미역, 조미감·젓갈, 김치 등이 있으나, 조사 품목 외 더 많은 제품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분명하지 않은 표준·규정은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 준비를 해야 하는 지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음
- ‘샘플 및 전시 용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형 중에서는 보건식품과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의 과다 샘플링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있음
  - 보건식품은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 그 검사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품목이기에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당한 통관 시비’로 발생한 사례는 사소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로 판단되며, 사전에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제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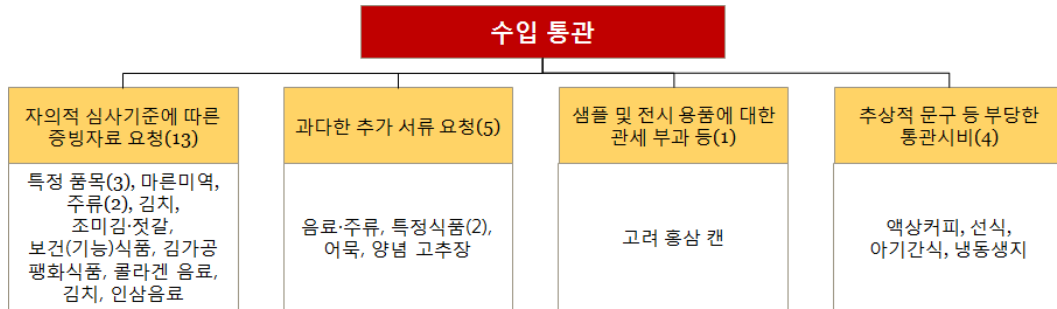
■ 수입통관 유형의 비관세장벽 사례를 살펴본 결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식품 규정을 명확하게 알아본 후, 규정에 따라 철저히 준비한다면 비관세장벽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국의 검역 담당자가 한국의 식문화가 담겨있는 제품의 특징을 모두 이해할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 시 검역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면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 현재 김치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이나, 해소 이전 대장균균수로 인한 통관거부에 대해 논문, 보고서, 식약처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중국 검역 담당관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중국 시장 진입에 성공한 사례가 있음
- 아기간식, 냉동생지, 액상커피, 선식 등의 제품 외포장지에 기입돼 있는 추상적 문구들에 대해 검역 담당자가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자,

수출업체가 문구를 삭제하여 중국 시장 진입에 성공함

- 하지만 수입통관 유형은 어떤 품목에도 악용되어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지역 항구의 검역 당국 및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 감으로써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중국의 한국식품 수입 및 수입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지역 항구의 통관검역 담당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제품 검역 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한 케이스가 많다고 함



<수입통관 유형의 비관세장벽 사례>

구분	협의의 비관세장벽		광의의 비관세장벽		계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기존 사례	5	특정식품을 포함한, 마른미역, 주류, 김치	8	특정식품을 포함한 음료, 주류, 어묵, 보건식품, 조미김, 젓갈	13
신규 사례	8	엑상커피, 선식, 콜라겐 음료, 팽화식품, 인삼음료, 김치, 고려홍삼캔	2	아기간식, 냉동생지	10
계	13	-	10	-	23
해소 사례	3	김치, 엑상커피, 선식	2	아기간식, 냉동생지	5

(5)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유형

- 기존 사례 중 광의의 비관세장벽으로 3건이 조사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실거래 가격 불인정 및 자의적 평가’와 ‘차별적 수입부가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

며, 모두 협의의 비관세장벽으로 정의됨

- ‘실거래 가격 불인정 및 자의적 평가’의 경우, 담당자가 제품의 본질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 가격만을 고집하여 신고 가격을 정함으로써 시장의 가격경쟁력을 감소시켜 발생하는 피해 사례임
  - 중국에서는 인삼은 보건식품으로 인지돼 있어 인삼 가공품(캔디, 음료 등 인삼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의 경우 해당 비관세장벽 유형으로 인해 피해 받는 사례가 발생함
- ‘차별적 수입부가금’의 경우, 세금 환급 지연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관한 것으로 한국의 세금 환급 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유형은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와 수입통관 유형과 같이 검역 담당관의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합리적 피해 사례로서 검역 담당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관세평가 및 수입부가금 유형의 비관세장벽 사례>

구분	협의의 비관세장벽		광의의 비관세장벽		계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기존 사례	2	특정 품목을 포함한 인삼 가공품 등	0	-	2
신규 사례	1	김치(배추, 갓김치)	0	-	1
계	3	-	0	-	3
해소 사례	0	-	0	-	0

(6) 운송·항만 비용 유형

■ 운송·항만 비용 유형은 광의의 비관세장벽으로 정의된 기존 사례 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규 사례의 경우 큰 이슈가 없었음



-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특정 통관항구를 지정함으로써 운송비가 상승한 사례  
이나, 한편으로 해당 항구의 검역 담당자의 제품 이해도가 높음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통관이 수월할 수 있음
-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항구를 이용할 경우 제품 평가 시 자의적 판단으로 통관검역을  
진행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제품 통관을 거부당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

<운송·항만 비용 유형의 비관세장벽 사례>

구분	협정의 비관세장벽		광의의 비관세장벽		계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기존 사례	0	-	1	특정식품	1
신규 사례	0	-	0	-	0
계	0	-	1	-	1
해소 사례	0	-	0	-	0

(7) 기타

- 기타는 광의의 비관세장벽으로 정의된 기존 사례 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규  
사례 중에는 큰 이슈가 없었던 걸로 조사됨
- 두 사례 모두 규정이 개정된 후 수출업체가 새로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광의의 비관세장벽으로서, 지속적으로 규정을 모니터링 한다면 피해 규모를 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對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절차별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

### (1) 對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절차<sup>14)</sup>

■ 중국의 농식품 수입 통관절차는 품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對중국 수출사 전 준비 및 운송을 포함하여 총 10 단계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고 까다로움

■ 중국의 수입식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록 비관세장벽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각 통관절차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비관세장벽 유형과의 관계를 도출함

• 對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절차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對중국 출사전 준비 및 운송

◇ 중국 수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운송하는 단계로,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생산국위생증명서, 검역이 필요한 생산 업체의 정부당국 검역증명서, 생산제품의 성분목록 및 검사보고서,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제품 등록 및 판매허가 증명서, 제품라벨 견본 등이 있음

#### ② 포장 라벨 심의

◇ 수입 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각 식품의 국가 규정에 따라 식품 명칭, 원료리스트, 원료정량표시, 고형물함량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라벨 견본을 제공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라벨 심사를 받음

#### ③ 수입적하목록 신고

◇ 적하목록의 전자데이터를 세관에 입력하여 화물의 적재 상황을 신고하는 단계이며, 데이터와 실제 적화물이 상이할 경우 향후 수출기업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

14) 수출 농수산물 중국 통관 매뉴얼(2016), 전라남도

④ 검역 신고

- ◇ 현장 검사에 합격한 검역 대상인 농식품에 대해 샘플링 실험을 하여 국가 표준 규격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불합격 시 한 번의 재심사를 진행하지만 재심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수입이 금지됨
- ◇ 현장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제품 재정비를 통해 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검역 심사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⑤ 수입 신고

- ◇ 운수기관 입항 후 14일 이내에 세관에 수출입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단계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함

⑥ 해관(세관) 심사

- ◇ 수입 농식품이 세관내부검사와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 검사 후 통과되지 못한 경우, 현지 세관이 심사토록 지시하는 과정임
- ◇ 심사에 필요한 신고내용의 완전성 및 유형성, 신고서 상 심사항목별 진실성 및 상업서류증명 등의 일치성, 품목분류 및 신고가격 심사를 진행함

⑦ 화물심사 및 제세 징수

- ◇ 화물심사는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상태, 수량, 가격 등이 신고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전수검사, 발취검사, 외형검사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확인함
- ◇ 제세징수는 관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심사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함

⑧ 화물 통관

- ◇ 신고내역, 화물 검사, 제세 징수 등의 전 과정을 완료한 농식품에 대해 세관이 통관허가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관리 감독 완료를 하는 단계로, 화물 통관 완료 후 4시간 이내 통관 수속을 진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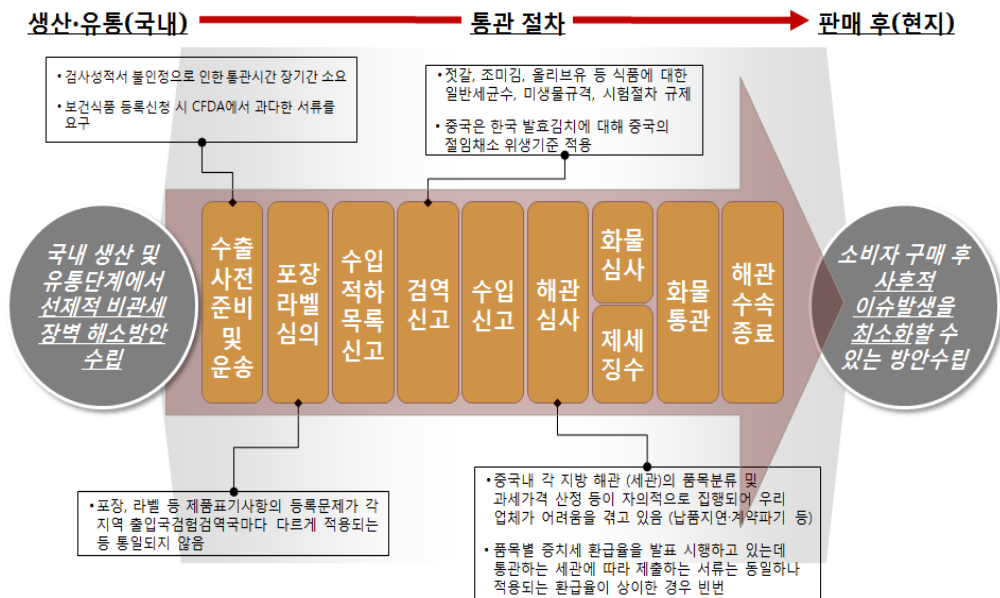
⑨ 해관(세관) 수속 종료

- ◇ 화물통관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요청한 수정정보완을 모두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임

⑩ 수속 종료 후 처리

- ◇ 전자통관시스템 관련 데이터에 신고서(상계, 환급, 지급)를 제출하여 수속 완료 데이터를 입력함

**비관세장벽 사례를 농식품 통관절차 별로 분류·분석함으로써,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을 수립함**



## (2) 통관절차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비교

- 각 통관절차별 규정 및 심사 내용을 검토하여 앞서 분석한 비관세장벽 유형별 결과<sup>15)</sup>와 비교해 봄으로써,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비관세장벽 유형을 파악함
  - 비관세장벽의 9가지 유형은 수입권한/자격제한, 수입규제/수량제한, 원산지 제도, 라벨링, 표준규격/검사제도, 수입통관, 선적전 검사 및 영사확인 제도, 관세평가/수입부가금, 운송/항만 비용 등이 있음
  
- 수출 사전 준비 및 운송 단계는 농식품의 수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중국으로 운송하는 단계로, 비관세장벽의 수입권한/자격제한, 수입규제/수량제한, 선적 전 검사 및 영사 확인 제도, 운송/항만 비용이 해당됨
  - 수입권한/자격제한, 수입규제/수량제한 등은 수출기업이 수출하기에 앞서서 수출 가능 여부 및 가능 수량 등의 규제를 알아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에 의해 수출 판로가 막힐 수 있음
  - 농식품 수출기업은 선적 전 검사 유형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검사 및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과 수수료로 인한 금전적 비용을 감당해야 함
  - 또한, 운송 및 항만 이용에서 발생하는 예치금, 이용료, 수수료 등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비관세장벽에 노출 돼 있음
  
- 포장라벨 심의 단계는 농식품 품목별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라벨에 표기된 제품의 정보가 올바르게 기입 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로, 비관세장벽 유형의 라벨링 부분과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부분, 그리고 수입통관 부분이 해당됨
  - ‘라벨링’ 단계에서는 국가표준(식품첨가제에 대한 성분표기에 관한 규정 GB2760-2014, 라벨링 규정 GB7718-2011)을 기준으로 검사하나, 지역 및 항구별 담당 세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준이 상이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외포장지에 기입된 추상적 문구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에 따라, 외포장지에 대한 광의의 비관세장벽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15) 제4절 1-가.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분석 참고

- 중국 검역당국은 유기농·식이섬유 관련 인증·HACCP 등의 인증제에 대해 국제 유사 규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에서 지정한 기관의 검사가 없을 시 외포장에 기입된 관련 인증을 삭제해야 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검역 신고 단계는 중국의 농식품 수입제품의 일부를 추출하여 식품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 세균 수 등을 검사하는 단계로 비관세장벽 유형의 원산지 제도, 표준규격 및 검사 제도가 발생할 수 있음

- 원산지 증명서 상의 내용과 실제 제품 간의 정보를 비교해 보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거나 무리하게 원산지 표기를 강요(원료를 수입한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對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절차와 비관세장벽 유형별 비교>

	수입권한 및 자격제한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원산지 제도	라벨링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수입 통관	선적전 검사 및 영사확인 제도	관세평가/ 수입 부가금	운송/ 항만 비용
수출 사전준비 및 운송	○	○	×	×	×	×	○	×	○
포장라벨 심의	×	×	×	○	○	○	×	×	×
수입적하 목록신고	×	×	×	×	×	×	×	×	×
검역 신고	×	×	○	×	○	×	×	×	×
수입 신고	×	×	×	×	×	×	×	×	×
해관 심사	×	×	×	×	×	○	×	○	×
화물심사 및 제세징수	×	×	×	×	×	×	×	×	×
화물 통관	×	×	×	×	×	×	×	×	×
해관수속 종료	×	×	×	×	×	×	×	×	×
수속종료 후 처리	×	×	×	×	×	×	×	×	×

- 또한 농식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불인정, 복수기관에 대한 검사 증명서의 중복 요구, 한국 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 불인정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비관세장벽이 발생할 수 있음

■ 해관 심사는 수입 농산품의 검사신고서의 완전성 및 진실성을 검토하고 상업서류 증명서와의 일치성을 파악하고 제품의 신고가격과 그에 따른 세금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비관세장벽 유형의 수입통관, 관세평가/수입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당 세관이 자의적 심사기준으로 제품 검사신고서의 완전성 및 진실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는 중복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심사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음
- 또한 담당세관의 제품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낮은 이해도로 인해 신고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됨으로써 타 통관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의 노출이 높은 편임

### (3) 통관절차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분석

■ “수출 사전준비 및 운송 단계”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장벽 사례는 9건으로 그 유형으로는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유형과 운송·항만 비용 유형 등이 있음

- 수입규제 및 수량제한 유형은 기존 사례의 경우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7건, 신규 사례의 경우 협의의 비관세장벽이 1건으로 총8건으로 조사되었음
- 운송·항만 비용 유형은 기존 사례의 경우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규 사례의 경우 큰 이슈가 없었음

<수출 사전 준비 및 운송 단계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분석>

유형		기존 사례			신규 사례			계
		협 의	광 의	소 계	협 의	광 의	소 계	
수출 사전 준비 및 운송	수입권한 및 자격 제한	-	-	-	-	-	-	-
	수입규제 및 수량 제한	2	5	7	1	-	1	8
	운송·항만 비용	-	1	1	-	-	-	-
	계	2	6	8	1	-	1	9

- 앞서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비관세장벽 유형은 기업 스스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힘든 유형으로, 수출 사전준비 및 운송 단계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포장·라벨 심의 단계”에서 발생된 비관세장벽 사례는 13건으로, 이 중 라벨링 유형은 조사된 사례가 없었으나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5건)와 수입통관 유형(8건)에서 라벨링 관련 이슈 발생 빈도가 잦은 것으로 조사됨

- 비관세장벽 라벨링 유형은 라벨링 관련 규정 GB2760-2014(식품첨가제에 대한 통칙으로 성분표기에 관한 규정)과 GB7718-2011(라벨링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이후<sup>16)</sup> 관련 비관세장벽 발생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기존 사례에서 조사된 라벨링 관련 비관세장벽 사례는, 실질적으로 라벨링 문제라기보다 라벨링과 관련된 수입통관 유형인 것으로 판단됨
-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유형의 경우, 유기농·식이섬유·HACCP과 관련된 해외 국가 표준규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외포장에 기입된 인증 관련 문구가 문제가 되어 피해가 빈번하게 관측됨
- 수입통관 유형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기입된 제품 외포장의 추상적 문구에 대해서 중국 검역 당국이 과장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문구를 제거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함
- 포장라벨심의 단계에서 비관세장벽은 기업이 라벨 제작에 있어서 사전에 관련된 규정을 깊게 살펴봄으로써 라벨에 의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포장라벨심의 단계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분석>

유형		기존 사례			신규 사례			계
		협 의	광 의	소 계	협 의	광 의	소 계	
포장라벨 심의	라벨링	-	-	-	-	-	-	-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	-	-	1	4	5	5
	수입통관(포장라벨 관련)	2	2	4	2	2	4	8
	계	2	2	4	3	6	9	13

16) 중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 컨설팅 업체 인터뷰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지금의 중국 라벨링 규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검역 신고 단계”에서 나타난 비관세 장벽 사례 24건 중 조사된 비관세장벽 유형은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가 있으며, 다른 수출 단계에 비해 피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유형은 기존 사례 3건의 경우 협의의 비관세장벽이 1건,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2건이 있었으며, 신규 사례 21건의 경우 협의의 비관세장벽이 13건,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8건으로 조사됨
- 해당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제품 원료에 대한 국가 표준 부재 또는 국제표준 불일치와 제품에 대한 까다롭고 차별적인 기준 적용에 있음
- 검역신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은 기업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케이스와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해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복합적으로 존재함
- 제품 원료에 의한 문제의 경우, 앞서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분석에서와 같이 원료의 대체재 및 통관 가능 항구 조사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가 가능함
- 하지만 수입품에 적용되는 까다롭고 차별적 기준을 기업이 수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정부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요구로 규정이 바뀐 이례적 사례로는 ‘콜라겐’이 보건의약품에서 규정이 완화되었으나, 이는 콜라겐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요구가 강력했었던 것으로 조사되며, 실제로 타국의 수출기업 요구로 규정이 조정된 사례는 매우 드물

<검역신고 단계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분석>

유형	기존 사례			신규 사례			계
	협의	광의	소계	협의	광의	소계	
검역 신고	원산지 제도	-	-	-	-	-	-
	표준·규격 및 검사제도	1	2	3	13	8	21
	계	1	2	3	13	8	21

■ “해관 심사 단계”에서 나타난 비관세 장벽 사례는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관세장벽 유형은 수입 통관(14건)과 관세 평가 및 수입부가금(3건) 유형이 조사됨

- 해관 심사 단계에서 발생한 수입통관 유형의 비관세장벽 사례를 조사한 결과, 기존 사례의 9건 중 협의의 비관세장벽이 3건,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규 사례의 5건은 모두 협의의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됨

- 앞서 비관세장벽 유형별 분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통관 유형 중 라벨링 이슈를 제외한 비관세장벽 현안은 과도한 서류 요청, 제품에 대한 자의적 평가, 과도한 샘플 채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비관세장벽 피해가 발생함
- 관세 평가 및 수입부가금 유형의 경우 기존 사례의 협의의 비관세장벽에서 2건, 신규사례의 협의의 비관세장벽 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역 담당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신고가격 설정과 부당한 세금 환급 정책에 따른 피해가 있음
- 해관 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원인은 검역 담당자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출기업이 검역 담당자와 원만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실제로 중국의 농식품 수입 컨설팅 업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검역 담당자와 오랜 관계를 맺어옴에 따라 통관검역 시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함
- 특히 검역 담당자가 주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상부기관 등의 외압에 노출이 높은 편이므로, 수출기업은 검역 담당자와의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세금 환급 정책 및 보건식품의 과다 샘플 채취의 경우, 기업 스스로 비관세장벽에 대비/해소하기에 어려운 사안으로서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해관심사 단계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비관세장벽 사례>

유 형		기존 사례			신규 사례			계
		협 의	광 의	소 계	협 의	광 의	소 계	
해관 심사	수입통관(검사검역 관련)	3	6	9	5	-	5	14
	관세 평가 및 수입부가금	2	-	2	1	-	1	3
	소계	5	6	11	6	-	6	17

PART III

제 3장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제1절 對중국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 개요
- 제2절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의의 비관세장벽 해소
- 제3절 협의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기존 및 신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광의의 비관세 장벽과 협의의 비관세 장벽으로 양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각 분류별 특징에 따라 해소 전략은 다를 수 있음
- 광의의 비관세장벽은 합리적인 비관세조치로, 수출 기업이 광의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전문 지식과 정보가 있을 경우 단기적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협의의 비관세 장벽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 및 산업 보호를 취지로 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국의 관점에서 부당하게 수출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비관세조치의 부당함을 중국 정부에 증명해야 함과 동시에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조치는 기업이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혹은 준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 자체가 비합리적이기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단기에 해소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단계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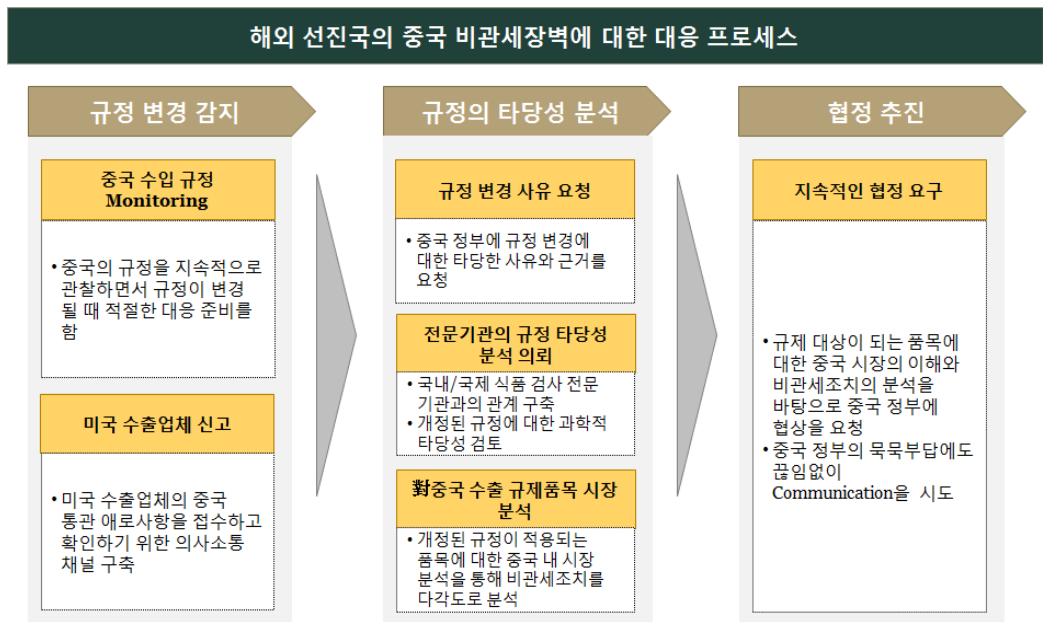
## (2)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프로세스

- 주요 선진국의 비관세장벽 사례 및 대응 과정을 살펴본 결과, 규정 변화 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규정 변경의 적용 품목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비관세장벽 발생 배경을 분석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은 비관세장벽 적용 품목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국제 및 중국 내 시장 상황을 비교 분석함에 따라 상대국의 비관세조치가 발생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상대국의 무조건적인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요청 및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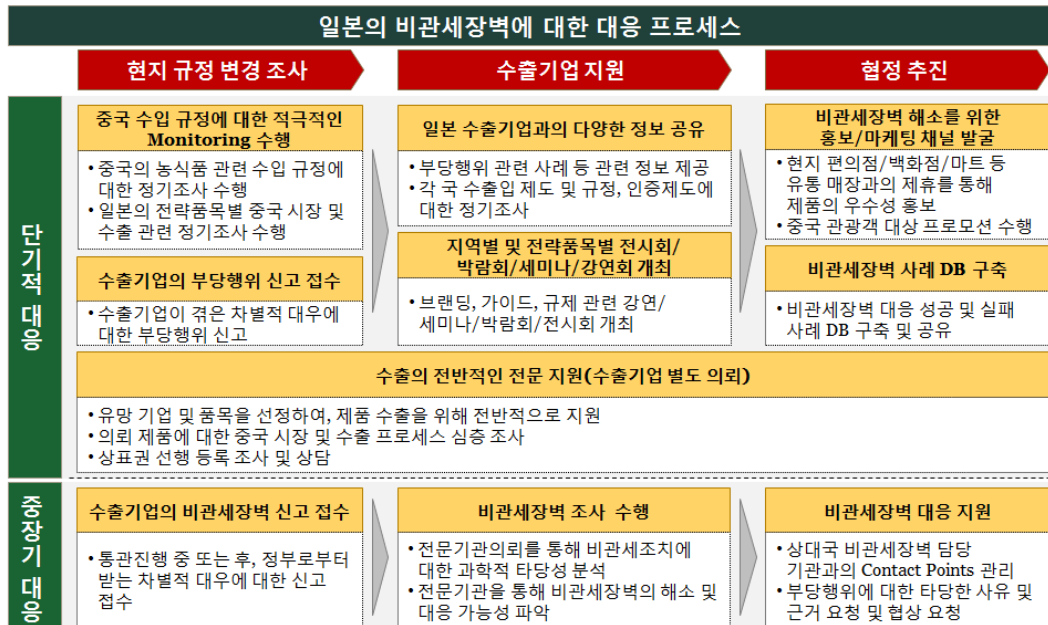
- 특히 미국은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육류 제품의 수입 허가를 이끌어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삼계탕을 제외한 모든 육류 제품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식문화 및 수출품목이 유사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 및 수출 기업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일본은 일본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와 농업수산물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의 주도로 비관세장벽에 대해 단기·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주로 비관세장벽 및 수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농식품, 특히 전략품목 별 중국의 수입 규정에 대한 정기 조사와 수출기업의 부당행위 신고 접수 등을 통해 규정 변경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현안을 적극적으로 조사함
- 또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규정, 인증제도, 비관세장벽 대응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시회/박람회/세미나/강연회를 개최하여 수출기업이 비관세장벽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품목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홍보/마케팅 채널을 발굴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해당 제품을 중국의 소비자가 先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수출기업의 별도 의뢰를 통해 유망 기업 및 품목을 선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출 프로세스 및 상표권 선행 등록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비관세장벽의 궁극적인 해소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중국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접촉 및 협상 시도로 대응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겪은 일본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사례를 접수받고, 해당 이슈를 분석하여 비관세장벽의 합리성 및 해소 가능성을 확인한 후,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하여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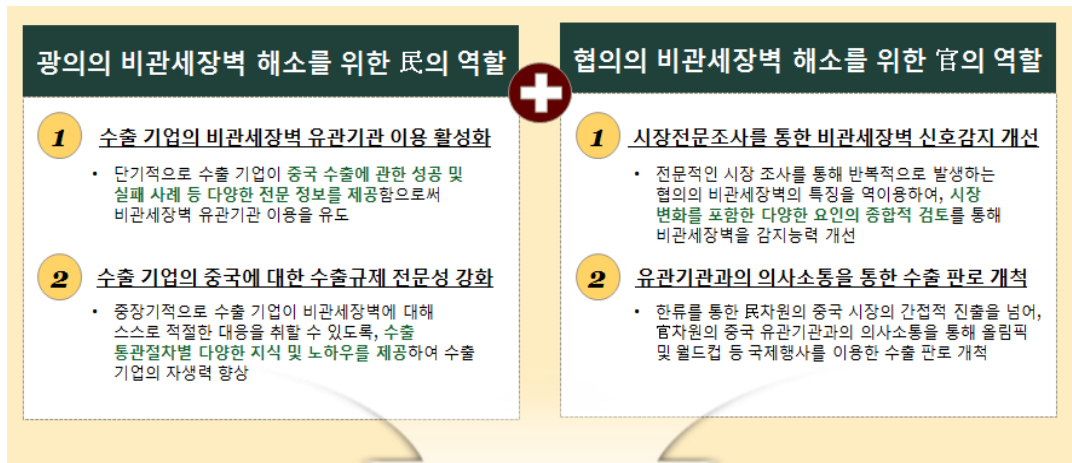


주) 일본의 비관세장벽 지원 사업 및 비관세장벽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Source: JETRO 홈페이지, MAFF 홈페이지, EmP Analysis

(3) 對중국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 개요

■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 및 선진 주요국의 대응 프로세스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수행할 수 있는 광의의 비관세 장벽과 협의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해소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광의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의 관련 규정이나 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정보 축적 및 공유가 필요함.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여,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 또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존에 축적된 정보에 대한 탐색 및 대 중국 수출 전문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협의의 비관세 장벽은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대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협의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통해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유관기관과의 컨택 포인트 및 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民·官 차원의 접근 및 해소**

- 광의의 비관세장벽은 합리적인 비관세조치로,, 수출 기업이 광의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전문 정보가 있을 경우 단기적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출 기업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원하기보다 수출 기업의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 광의의 비관세장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 및 중국 현지 시장 정보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수출 기업이 간과하고 있는 수출 규제에 관한 전문 정보, 지식 및 노하우 등 역시 수출의 흥망성쇠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본 과업을 통해 수출기업이 스스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광의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 기관 이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수출 전문성을 개선하도록 함

#### (1) 비관세장벽 유관기관 및 수출기업의 정보 공유

- 품목마다 상이하지만, 현재 중국의 법 규정 시스템은 과도기 단계로 규정에 대한 변경이 잦은 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비관세장벽 포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코트라 등 비관세장벽 유관기관 및 부서의 정보 수집 및 제공이 중요함
- 광의의 비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기관 및 부처별 수출 지원 부서에 대한 수출 기업의 실질적인 이용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실무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이슈에 관한 정보의 부족은 곧 비관세장



벽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기업 및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킴

- 따라서 수출 기업의 비관세장벽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문제에 대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비관세장벽의 각 유형별 유관기관 및 부서를 식별함으로써, 수출 기업이 비관세장벽 유형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재 운영 중인 비관세장벽 담당 조직 및 부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용 중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유관기관 이용 경로를 조사하여 비이용 중인 수출기업의 이용을 유도해야 함
- 또한 비관세장벽 유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해당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수출 기업 지원의 품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관세장벽 유관 기관 및 부서 역시 실무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이슈 및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수출 기업과 비관세장벽 유관 기관 및 부서 간 선 순환적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출 기업은 물론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2) 수출기업의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 전문성 강화

■ 국내 수출 기업은 중국에 대한 수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수출 상품의 경쟁력에 만 몰두한 채로 수출을 무모하게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식품 R&D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에 따라, 중국에 없는 한국의 신제품<sup>17)</sup>을 수출할 때 중국의 국가표준이 부재할 수 있음

- 또한 수출 시 검역 담당자들의 각 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감안할 때, 제품의 경쟁력만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수출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수출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중국 현지 시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제품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 및 법 규제 등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관세장벽 유형을 對중국 수출 통관절차와 비교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중국의 수출 통관절차 별 발생 가능한 비관세장벽 유형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sup>17)</sup>
- 광의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피해사례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간 우수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수출기업이 비슷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수출 기업의 경우, 비관세장벽 해소 또는 우회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현지 수출 컨설팅 업체를 연계해 줌으로써 수출 기업의 전문성을 외부 기관을 통해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수출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받을 때, 수출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의 수출 법 규제, 통관이 원활한 항구 등 수출지원 업체가 제공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수출 통관 과정 중 발생하는 일반 식품에 대한 광의의 비관세장벽 유형의 경우,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는 중국 검역 담당관임에 따라 수출 기업과 중국 검역 담당자와의 유대 관계 형성은 수출 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수출 기업은 통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식품 수출의 주요 경쟁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실제로 현지 수출 컨설팅 업체 역시 이러한 이유로 검역 담당자와 긴밀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

17) “협의의 비관세장벽 신규 사례”, 사례 5. 쌀눈가공품 참고

18) “對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절차별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 참고

- 협정의 비관세장벽은 표면적으로는 자국민 및 산업 보호를 취지로 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국의 관점에서 부당하게 수출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즉, 상대국은 비관세조치의 부당함을 중국 정부에 증명해야 함과 동시에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협정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비합리적인 조치는 기업이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 자체가 비합리적이기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단기에 해소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단계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정부 차원에서 협정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한다고 할지라도 그 해소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교역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및 사회문화적 이슈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비관세조치를 재시행 할 수 있음
- 따라서 협정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 대상 품목의 전문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협정의 비관세장벽을 이해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요구됨
- 또한 중국 유관기관과의 컨택 포인트 및 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인 컨택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1) 시장 전문 조사를 통한 비관세장벽 신호 감지 개선

■ 비관세장벽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역이용하여 협의의 비관세장벽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비관세장벽 신호 감지의 메카니즘을 구축할 수 있음

- 실제로 미국의 경우,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의 렉토파민 검출에 따른 교역을 중지<sup>19)</sup>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렉토파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중국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중국의 비관세조치가 더욱 강화됨
- 그 후, 미국 정부는 중국의 돼지고기 평균 가격 변동,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 변동, 그리고 타국산 돼지고기 수입량 변동을 비관세조치 시행 이전부터 추적하였고, 그 결과 두 지표 간 트렌드가 매우 비슷함을 발견함

■ 품목에 대한 시장 조사는 단순히 현재의 트렌드 조사를 넘어서 중국의 비관세조치 시행 이전부터 교역 상황, 해당 품목의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관세장벽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함

- 실제로 중국은 쌀의 국제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여 비축하고 차년도에 쌀 수입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자국 시장에 비축량을 판매한 사례가 있음

■ 또한 비관세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다가 해소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트렌드의 정기적 조사를 통해 함께 해당 품목의 시장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여, 협의의 비관세장벽을 감지하고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시장의 왜곡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비관세장벽 동향의 공통점을 찾는 것의 의미는 향후 비관세장벽이 발생할 수 있는 신호를 시장 변동을 통해 사전 감지할 수 있음을 말함

■ 시장 변동이 협의의 비관세장벽을 예측하는 온전한 수단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초기 신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초기 대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9) “중국의 주요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주요 기존 사례”, 사례10 참고

(2) 중국 수출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개선을 통한 수출 판로 개척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포함하여 수출 통관절차마다 담당하고 있는 중국 유관기관과의 컨택 포인트를 발굴하여,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유도함
- 중국 유관기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정치 및 사회문화적 이슈를 넘어 협의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냉정하고 원만하게, 또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절실함
  - 해외 선진국 역시 중국 시장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식품 및 수출입 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우, 중국으로 캘리포니아산 사과 수출을 위해 약 17년째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감자는 2000년부터 약 13년 동안 통보하여 2013년 당시 수입 허가를 받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sup>20)</sup>
-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한류, 특히 드라마를 통해 중국시장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식문화 및 다양한 식품(삼계탕 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民 차원에서 협의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적 기류에 대한 지나친 편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최근 발생한 사드(THAAD)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가 악화된 후, 식품 통관 과정에서 통관 지연 및 거부가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올림픽, 월드컵, 영화제 등 국제적인 행사와 같이 對중국 수출 규제 품목을 시제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여, 한류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함과 동시에 우수성을 홍보하여 협의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도록 함
  - 미국은 캘리포니아산 딸기를 중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는 베이징 올림픽 시즌 동안의 일시적 수입을 허가함<sup>21)</sup>

20) “중국의 주요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주요 기존 사례”, 사례6, 8 참고

21) “중국의 주요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주요 기존 사례”, 사례4 참고

-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산 딸기를 수출하여 중국에서 우려했던 위생에 대한 안전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 규제에 대한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제품에 대한 위생적 안전과 품질의 우수성을 검증 및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서 향후 수출 판로 개척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즉, 한류를 통한 民 차원의 중국 시장 간접적 진출과 官 차원의 지속적인 중국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논의 시도를 통해, 민관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협의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임